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4-150032-10



2015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2015

열린 토론  
바른 선택

# 2015 연례보고서 목차

## 제1장

### 일반현황

1. 설치목적 .....	10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	10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연혁 .....	11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직무 .....	13

## 제2장

###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관리

1. 상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	18
2. 하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	19

## 제3장

###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	22
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	27

## 제4장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 법규 제·개정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34
2. '대학생토론대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36
3. 유권자 중심의 TV토론 법·제도 연구 .....	36





## 제5장

# 세계 각국의 토론전문기관과의 교류 협력

- 1.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지원 ..... 40
- 2. 미국 대통령토론위원회(CPD)와의 교류협력 추진 ..... 42

## 제6장

# 민주시민토론문화의 육성

- 1.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 ..... 46
- 2.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 47
- 3.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 57
- 4.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타 기관·단체 등의 토론 지원 ..... 63
- 5. 미래유권자의 성숙한 민주시민토론능력 배양 ..... 66

## 제7장

# 부록

- 1. 201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표 ..... 68
- 2. 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69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 법규 ..... 72
- 4. 역대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 116
- 5.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 118
- 6. 역대 후보자토론회 개최현황 ..... 120

# 2015 연례보고서 표목차

[표 1-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명단	10
[표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혁	12
[표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현황	13
[표 1-4]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14
[표 2-1]	2015년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 현황	18
[표 2-2]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개최 현황	19
[표 2-3]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개최 현황	20
[표 3-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22
[표 3-2]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23
[표 3-3]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23
[표 3-4]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24
[표 3-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선정 현황	24
[표 3-6]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25
[표 3-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27
[표 3-8]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27
[표 3-9]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28
[표 3-10]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28
[표 3-11]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29
[표 3-1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선정 현황	29
[표 3-13]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30
[표 3-14]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32
[표 4-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34
[표 4-2]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35
[표 4-3]	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주요내용	36
[표 4-4]	선거방송 TV토론 관련 법·제도 개선안	37
[표 5-1]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지원 추진경과	41
[표 5-2]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주요 후원 내용	41



[표 5-3]	미국 대통령토론위원회(CPD)와의 교류협력 단계별 추진계획 .....	43
[표 6-1]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	48
[표 6-2]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참가자 접수 현황 .....	50
[표 6-3]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진행방식 및 규칙 .....	50
[표 6-4]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	54
[표 6-5]	2015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현황 .....	58
[표 6-6]	제5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	59
[표 6-7]	제5회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	61
[표 6-8]	제1회 광주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	63

# 2015 연례보고서 사진목차

[사진 3-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의	23
[사진 3-2]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25
[사진 3-3]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토론자 좌석 · 발언순서 추첨	25
[사진 3-4]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	26
[사진 3-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수화통역 설비	26
[사진 3-6]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방송화면	26
[사진 3-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방송화면(청중과 소통의 시간)	26
[사진 3-8]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	31
[사진 3-9]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수화통역 설비	31
[사진 3-10]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장면	31
[사진 5-1]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대회 개최식 장면	40
[사진 5-2]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 축사 장면	40
[사진 5-3]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폐회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시상 장면	42
[사진 6-1]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 개최 장면	46
[사진 6-2]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위한 청주대학교와의 MOU 체결	47
[사진 6-3]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위원회의 개최 장면	47
[사진 6-4]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포스터	48
[사진 6-5]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경기 모습	51
[사진 6-6]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대진표	52
[사진 6-7]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식 장면	53
[사진 6-8]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식 국민의례	53
[사진 6-9]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폐회식 및 시상식 장면	54
[사진 6-10]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기념사진 촬영	54
[사진 6-11]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준결승전	56
[사진 6-12]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승전	56



[사진 6-13]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준결승전 시상식 장면	56
[사진 6-14]	제5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대회 기념촬영	58
[사진 6-15]	제5회 인천 고등학생 토론대회 예선 장면	60
[사진 6-16]	제5회 인천 고등학생 토론대회 본선대회 장면	60
[사진 6-17]	제5회 인천 고등학생 토론대회 수상자 기념 촬영	61
[사진 6-18]	제1회 빛고을 고등학생 토론대회 예선대회 장면	62
[사진 6-19]	제1회 빛고을 고등학생 토론대회 본선대회 방송장면	62
[사진 6-20]	제1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고등부 결승 장면	64
[사진 6-21]	제1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수상자 기념 촬영	64
[사진 6-22]	2015년 오산학생토론축제 장소	65
[사진 6-23]	2015년 오산학생토론축제 토론체험 실습 장면	65



## 제1장

# 일반현황

1. 설치목적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연혁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직무



# 제 1 장 일반현황

## 1. 설치목적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에 의한 정책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 1)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를 포함하여 11인(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1-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명단

(2015. 12. 31 현재, 위촉일자순)

직위	성명	직업	추천기관
위원장	이정희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성룡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성명	직업	추천기관
위원	성한용	언론인	새정치민주연합
	허익범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오미영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기원	방송인	MBC
	양정숙	변호사	법조계
	박유성	교수	학계
	김진수	방송인	KBS
	박상기	교수	시민단체
	손교명	변호사	새누리당

### 3) 위원장 선출 등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기구로는 중앙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간사장 및 간사를 두고 있다.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연혁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1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6개),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개)가 각각 창설되었다.

2008년 3월 「천안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제정(2008. 3. 21.)으로 천안시에 자치구가 아닌 천안시서북구와 천안시동남구가 설치되어 천안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폐지되고 천안시서북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천안시동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표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혁

(단위 : 개)

일자	근거	현황			
		계	중앙	시·도	구·시·군
2004. 3. 1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법률안에 따라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	-	-	-
2004. 3. 15.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	1	-	-
2004. 3. 29. 까지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16)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181) 창설	198	1	16	181
2008. 3. 21.	• 천안시 분구에 따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 증설(↑2) : 천안시서북구·천안시동남구위원회 ※ 폐지(↓1) : 천안시위원회	199	1	16	182
2008. 5. 30.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 ※ 증설(↑67) : 국회의원선거구위원회가 아닌 구·시·군위원회 단위 설치	266	1	16	249
2010. 7. 1.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249개→251개) ※ 증설(↑5) : 창원시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위원회 ※ 폐지(↓3) : 창원시·마산시·진해시위원회	268	1	16	251
2012. 7. 1.	• 세종특별자치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 연기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폐지	268	1	17	250
2014. 7. 1.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증설·폐지 (250개→251개) ※ 증설(↑4) : 청주시상당구·청주시서원구·청주시흥덕구·청주시청원구위원회 ※ 폐지(↓3) : 청주시상당구·청주시흥덕구·청원군위원회	269	1	17	251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내에 여러 개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 지방선거 때에는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점이 노정되었다. 2008년 4월에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67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앙과 16개 시·도를 포함하여 모두 266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0년 7월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창원시가 설치되고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창원시에 5개 구가 신설되어 창원시·마산시·진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폐지하고, 창원시의창구·창원시성산구·창원시마산합포구·창원시마산회원구·창원시진해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249개였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51개로 늘어났다.

2012년 7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연기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에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개가 늘어 17개가 되었고,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개 축소된 250개가 되었다.

2014년 7월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청주시가 설치되어 청주시상당구·청주시흥덕구·청원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폐지되고 청주시상당구·청주시서원구·청주시흥덕구·청주시청원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201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에 1개, 시·도에 17개, 구·시·군에 251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표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현황

(2015. 12. 31. 현재)

구분	위원회수	지역별																
계	269																	
중앙	1																	
시·도	1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시·군	251	25	16	8	10	5	5	5	-	44	18	14	16	15	22	24	22	2

##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직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리 사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정한 정책토론회 관리,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토론회 기법 연구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개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 능력과 자질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4] 선거방송토론의 종류

주관	종류	선거별	개최시기	횟수	근거법률
중앙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2회 이상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임기만료선거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일까지	월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정당 정책토론회	-	연중 (단,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외)	연2회 이상	「정당법」 제39조
시·도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중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구·시·군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1회 이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 2)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라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주요 정당을 초청하여 정당의 정강, 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은 정당이 자당의 정강·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당정책토론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 3) 민주시민 토론문화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민주시민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연수·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토론대회, 토론캠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학생들의 선거·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토론관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실무자들의 교육·연수를 통해 보다 나은 토론회 운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4) 토론회 등의 기법 연구 및 개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활성화와 토론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유관 학회, 기관·단체들과 교류·협력,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후원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용역 등을 통해 토론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제 2 장

#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1. 상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2. 하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 제 2 장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2015년 상·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로 정책선거 실현에 기여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점검을 하였다.

[표 2-1] 2015년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 등 개최 현황

(단위 : 회)

시기별	선거별	합계	대담·토론회	방송연설회
합계		8	5	3
상반기	국회의원	6	4	2
하반기	구·시·군의장	2	1	1

### 1. 상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2015. 4. 29. 실시한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책임관리하에 좋은 방송시간대 확보를 위한 방송사와의 협의 강화,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TV토론회 개최완료, 수화통역 또는 자막방송 필수적 실시 등 주요 전략목표를 공유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나타난 문제점이 재·보궐선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따라서, 시·도토론회 책임하에 상·하급토론회 간 지휘·감독체제 구축, 방송사와의 좋은 시간대 편성을 위한 협의 등을 통하여 TV·라디오 동시중계(인천서구강화군을) 도입하였고, 광주서구을선거구의 경우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후보자 개별질문사항을 사전에 녹화하여 토론회장에서 질문자료로 활용하는 등 후보자TV토론회가 정책선거 실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아울러, 후보자TV토론회(4. 16.~4. 24.)을 지정하고, 관리상황반을 운영하여 총 6회의 후보자TV토론회를 사전투표일 전에 개최(중계방송)완료하고,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자막방송 실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인터넷 언론사 등 후보자TV토론 개최일정 안내 홍보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표 2-2]**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개최 현황

(4개 국회의원 선거구)

시·도명	선거구명	구분	개최장소	개최일시	방송일시	중계 방송사	사회자 (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서울	관악구을	토론회	현대HCN 스튜디오	4. 21.(화) 10:30~	4. 22.(수) 21:00~	현대HCN 관악방송	김은경 (교수)	오신환(새) 정태호(민) 정동영(무)	-
		연설회		4. 21.(화) 13:30~				신종열(공) 송광호(무) 변희재(무)	-
인천	서구 강화군을	토론회	OBS 경인방송 스튜디오	4. 22.(수) 20:00~	4. 23.(목) 18:00~	OBS 경인방송	홍원기 (아나운서)	안상수(새) 신동근(민) 박종현(정)	-
광주	서구을	토론회	KBS광주 공개홀	4. 19.(일) 08:10~	4. 19.(일) 08:10~	KBS광주	정병윤 (기자)	정 승(새) 조영택(민) 강은미(정) 천정배(무)	-
		연설회	KBS광주 뉴스룸	4. 17.(금) 14:00~	4. 19.(일) 09:40~			조남일(무)	-
경기	성남시 중원구	토론회	아름방송 스튜디오	4. 21.(화) 19:00~	4. 21.(화) 19:00~	아름방송	오미영 (교수)	신상진(새) 정환석(민) 김미희(무)	-

주) 정당명 약칭 : 새누리당(새), 새정치민주연합(민), 정의당(정), 공화당(공), 무소속(무)

## 2. 하반기 재·보궐선거 토론회 등 관리

2015. 10. 28. 실시한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실시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고성군수) 후보자TV토론회 등을 관리함에 있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해당 도 및 군토론회위원회에서 참고할 “정당별 직전선거의 득표율 현황”,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자료 수집”, “후보자TV토론회 주간 지정·운영”, “후보자TV토론회 다시보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안내하는 등 완벽한 후보자TV토론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였다.

특히 고성군토론회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현안을 질문사항으로 선정하여 후보자간의 차별화 된 해결방안을 듣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행방식에 있어 후보자 주도권을 부여한 상호토론을 도입함으로써 상대방의 공약과 자질을 심도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당초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초청후보자가 불참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처리하는 등 대과없이 관리하였다.

[표 2-3]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TV토론회 개최 현황

선거명	대상	개최구분	장소	개최일시	방송일시	중계방송사	사회자(현직)	후보자	
								참석	불참
고성군수 재선거	초청	토론	MBC경남 창원홀	10. 21.(수) 9:45~10:33	10. 21.(수) 9:45~10:33	MBC 경남	김창룡 (교수)	백두현(민) 이상근(무)	최명호(새)
	비초청	연설	MBC경남 창원홀	10. 20.(화) 14:00	10. 21.(수) 10:33~11:00	MBC 경남	-	김인태(공) 이재희(무) 정호용(무)	-

주) 정당명 약칭 : 새누리당(새), 새정치민주연합(민), 공화당(공) 무소속(무)

## 제 3 장

#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 제 3 장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영방송사는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 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 1) 개최일시·장소 등 선정

중계주관방송사(MBC)와 간담회(1. 29.)를 개최하여 3. 23.(월) MBC 상암동 신청사내 스튜디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2월 26일 개최된 제2차 위원회의를 통하여 개최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였다.

**[표 3-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내용
개최일시	2015. 3. 23.(월) 10:00 ~ 12:00(120분)
개최장소	MBC A스튜디오
토론자	정책위의장 등
토론분야	국정현안
사회자	성경섭(MBC 국장)
중계방송	KBS, MBC(주관방송), SBS 동시생중계

## 2) 토론자 선정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는 2015년 1/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3개 정당을 초청대상 정당으로 선정하였다.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토론자로 초청하기 위하여 주요 정당을 방문·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각 정당에서는 김세연(새누리당 정책위부위원장),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위원장), 조승수(정의당 정책위위원장) 등 각 정당의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현직 국회의원을 토론자로 지정하였다.

**[표 3-2]**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소속	직위	성명
새누리당	정책위부위원장	김세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위원장	홍종학
정의당	정책위위원장	조승수

## 3) 위원회의 진행

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 등은 정책토론회 의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의결사항은 2차례 준비소위, 1차례 전문위원회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전체 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준비소위원회는 토론주제·진행방식, 사회자, 질문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상임위원을 포함한 공영방송사 추천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운영하였다.



**[사진 3-1]**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의

**[표 3-3]**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위원	운영기간	직무
이성룡 상임위원, 김진수, 송기원, 오미영, 허익범 위원	제1차 정당 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2015.2.26.~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주제(안) 검토</li> <li>진행방식(안) 검토</li> <li>질문사항(안) 검토</li> <li>사회자 선정(안) 검토</li> </ul>



#### 4) 사회자 선정

사회자는 위원 7인의 추천 결과를 종합하여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천빈도가 가장 높은 성경섭 MBC 국장을 최종 선정하였다.

사회자는 준비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토론주제별 질문사항 및 논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실질적인 검토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회 준비에 임하였다.

[표 3-4]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토론분야	성명	직업
국정현안	성경섭	MBC 국장

#### 5) 토론주제 선정

토론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회 출입기자·경제부 기자, 해당 상임위 소속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국민 토론주제·질문 공모, 대한변호사협회 등 2개 단체, 전문위원 3인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하였다.

토론주제는 “우리경제, 나아갈 길은?”이라는 대주제를 선정하고, ‘증세 논란과 복지, 해법은?’(주제1), ‘공무원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2), ‘부동산 정책, 방향은?’(주제3),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4)의 소주제를 선정하였다.

[표 3-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선정 현황

대주제	소주제
우리경제, 나아갈 길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세논란과 복지, 해법은?</li> <li>• 공무원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li> <li>• 부동산 정책, 방향은?</li> <li>•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li> </ul>

#### 6) 진행방식 결정

발언시간은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2분 이내)을 포함하여 각 토론자에게 총 30분씩의 자유토론시간(시간총량제)을 부여하고, 마무리 발언시간은 방송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토론자별 1분30초씩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반국민 19명, 16개 시·도 홍보과장·계장, 2개 재·보궐선거 지역 간사 등 19명, 총 38명으로 방청객을 구성하고 소주제 2개의 토론이 끝날 때마다 청중과의 소통시간을 마련하여 방청객에게 토론내용에 대한 소감, 당부의 말, 궁금한 점 등 질문기회를 주어 정책소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 설명회 개최

2015. 3. 13. 15: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초청대상 정당 3개 정당 토론자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토론주제와 진행방식 등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천하였다. 추천결과는 A : 정의당, B : 새정치연합, C : 새누리당 순이었다.

또한, 각 포맷별 토론시간관리시스템(타이머) 운용 시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진행 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토론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표 3-6]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비고
제1차	2015. 3. 13.(금)	국회의원회관 201호	제1간담회의실



[사진 3-2]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사진 3-3]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토론자 좌석·발언순서 추천

## 8) 개최 홍보

각급토론위원회, 방송사·인터넷언론사,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토론회 진행시기별로 정책토론회의 필요성, 순기능 등(토론주제·진행방식 결정전까지), 토론주제·질문사항 국민제안 공모(2. 16.~3. 9.까지), 개최일시·초청정당·토론주제 등(개최 종료 시까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안내공문, 팝업·배너 게시 등 온·오프라인 상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중계방송사인 KBS, MBC, SBS에 개최안내 및 개최결과에 대한 뉴스보도가 있었고, 주요 일간지·인터넷 언론사 등을 합쳐 120회 이상 기사화 되었다.

## 9) 토론회장 설비

토론회장은 사회자를 정중앙에 배치하고 토론자 3명과 마주보는 구조로 배치(사회자 맞대면 구조)하였으며, 청중은 토론자와 사회자 좌석의 좌우로 20인씩 2단으로 균등하게 배치하였다.

수화통역사 세트를 별도 설비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을 동시에 실시하였고, 토론자별 개별타이머는 좌석에서 잘 보이도록 토론자 전면의 각각 3대 설치, 사회자용 모니터는 사회자석 옆 테이블에 1대 설비하였다.

스튜디오의 중앙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CI를 새긴 원형구조물 설치하였고, 분장실 3개소, 위원 모니터실 등 부대시설을 마련하여 관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사진 3-4]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



[사진 3-5]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수화통역 설비

## 10) 토론회 진행

토론회는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발언 순서에 따른 토론자의 답변을 시작으로 사회자가 각 주제마다 토론 논점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토론흐름을 이끌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3-6]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방송화면



[사진 3-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방송화면  
(청중과 소통의 시간)



청중소통시간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질문자는 사전에 고지한 주의사항을 지키고 질문을 잘 마무리 하였으며, 토론의 역동성과 현장감을 살리고자 하는 효과도 충분히 살렸다.

토론자는 주제별로 2분 내외에서 발언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준수하였으나, 주제1의 토론시간이 조금 일찍 끝남에 따라 사회자가 그 다음 주제들의 토론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진행하고, 마무리발언 시간(1분→1분30초)을 늘려 진행하였다.

## 11) 시청률 현황

시청률은 TNS 조사기준으로 6.1%로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나, AGB 조사기준으로 는 전년도보다 약간 낮은 3.5%를 기록하였다.

[표 3-7]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구분	토론자	AGB기준			
		KBS1	MBC	SBS	계
1차(3. 23. 10:00)	정책위의장 등	1.8	0.9	0.8	3.5

## 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 1) 개최 일시·장소 등 선정

KBS 보도본부 선거방송기획단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방문 및 협의를 통하여 11. 13.(금) 오전 10시 KBS 여의도 본관 스튜디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제7차 위원회의 (10. 12.)에서 개최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였다.

[표 3-8]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내용
개최일시	2015. 11. 13.(금) 10:00 ~ 12:00(120분)
개최장소	KBS TS-1 스튜디오
토론자	최고위원 등
토론분야	국정현안

구분	내용
사회자	김진석(KBS 기자)
중계방송	KBS(주관방송), MBC 동시생중계

## 2) 토론자(초청대상 정당) 선정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2015년 3/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을 초청대상 정당으로 결정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토론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토론주제가 선정되고 나서야 토론자를 추천하였지만 토론주제와 관련하여 정당의 책임있는 간부를 추천하였다. 이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과 입장을 제시하였다.

[표 3-9]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자 현황

소속	직위	성명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인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추미애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 3) 위원회의 진행

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 등은 정책토론회 의사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의결사항은 준비소위(1회), 전문위원회의(1회)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전체 위원회의(총 3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는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의 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정당 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과 방송사, 학계, 법조계 위원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준비소위원회는 정당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주제, 사회자 선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표 3-10]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준비소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위원	운영기간	직무
이성룡 상임위원, 허익범, 오미영, 송기원, 김진수 위원	제2차 정당 정책토론회 종료시까지 (2015.10.12.~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주제(안) 검토</li> <li>진행방식(안) 검토</li> <li>사회자 선정(안) 검토</li> </ul>

#### 4) 사회자 선정

사회자는 위원 11인의 추천을 받아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천수가 높은 2인을 전체 위원 회의에 상정하여 KBS 김진석 기자가 선정되었다.

사회자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자와 사전 업무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토론회 진행에 관하여 논의하고 사회자에게 ‘진행매뉴얼’을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사회자로부터 토론회 대본의 오프닝과 클로징멘트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의견교환을 통해 자연스러운 토론진행을 유도하였다.

**[표 3-11]**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사회자 현황

토론분야	성명	직업
국정현안	김진석	KBS 기자

#### 5) 토론주제 선정

토론의제 선정을 위하여 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전문위원,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국회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의제를 수집하였다.

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 국민적 관심 주제인 ‘노동문제’, 선거를 앞둔 시점이므로 공천제 등 ‘선거제도’ 그 외에 ‘2016년도 예산안’, ‘한국형전투기사업’ 등이 의제선정과정에서 논의되었고, ①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②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방안은? ③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의 주제로 선정되었다.

주제의 범주가 매우 넓어 토론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노동개혁의 경우 ‘청년일자리,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 선거제도의 경우 ‘정당공천, 선거구획정’을 예시 논점으로 제시함으로써 토론자가 토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표 3-12]**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 주제 선정 현황

대주제	소주제
국정현안을 듣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li> <li>•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은?</li> <li>• 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li> </ul>

## 6) 진행방식 선정

진행방식은 토론자의 발언시간(총 31분) 내에서 주제별 발언 시간의 조정이 가능한 ‘시간총량제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하여 토론자가 순서대로 답변하고, 이어 사회자가 논점을 정리 한 후 토론자간 자유토론, 끝으로 맺음말 순으로 구성하였다.

자유토론은 토론자별 총량(31분)의 범위내에서 주제별로 대략적인 토론시간을 정해놓고 즉, 제1주제(13분 정도), 제2주제(9분 정도), 제3주제(9분 정도)순으로 운영하고 토론을 마무리하는 맺음말(1분)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7) 설명회 개최

11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3개정당의 토론자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준비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토론자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으로 결정하였다.

추첨결과는 A : 새정치민주연합, B : 새누리당, C : 정의당 순이었다. 토론시간관리시스템(타이머 프로그램) 운용 시연과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토론주제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표 3-13]**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비고
제2차	2015. 11. 4.(금)	국회의원회관 209호	제6간담회의실

## 8) 개최 홍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홍보 팝업·배너 게시, 중앙위원회 공보과와 협조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 토론회 개최 당일에도 국회 및 중앙선관위 출입기자와 중앙선관위 공보과를 통하여 리허설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에 토론회 현장 장면을 포함한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

## 9) 토론회장 설비 등

협소한 스튜디오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자와 토론자가 나란히 앉는 구조로 설비하고 토론자별로 좌석을 각 1개씩 배치하였으며, 역동적인 화면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토론자·사회자, 풀샷, 수화 전

용 카메라 총 6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토론시간관리시스템, 사회자 전용시계(리얼 타임), 수화통역사 세트를 설치하고, 중앙에 토론위원회 CI로고를 넣은 원형 구조물 설치하여 원활한 토론진행과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토론자용 분장실(대기실) 3개소를 확보해서 토론자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사진 3-8]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회장 설비



[사진 3-9]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수화통역 설비

## 10) 토론 진행

토론자가 소지하는 참고자료의 종류·규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토론자들은 방송에 적합한 규격의 판넬을 준비하였다. 이에 판넬의 내용이 시청자에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리허설 시간에 카메라 감독들에게 안내하여 카메라 각도와 위치, 방향 등을 세팅하게 하였다. 다만 한 토론자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A4 용지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화면상으로 자료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다.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자가 답변한 내용을 사회자가 정리하고, 사회자가 논점을 제시하면 토론자간 자유롭게 토론이 이어지도록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제1주제(노동개혁)의 경우 위원회에서 제시한 예시논점 외에도 '해고문제', '노사정 합의'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 사회자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하여 노사정 합의문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토론자가 주제별로 할애하는 발언의 양에 차이가 있어 토론자간 발언 잔여시간 편차가 3-5분 정도로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의 조정을 위하여 잔여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토론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기도 하였다.



[사진 3-10]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장면

## 11) 시청률 현황

시청률은 AGB 조사기준(전국기준)으로 3.7%를 기록하였다. 정당의 비중있는 간부급 토론자 참석과 시의적절한 국민의 관심사안을 토론의제로 삼은 덕분에 SBS가 참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비하여 소폭 상승을 보였다. SBS가 방송국 창설기념 특집 편성프로그램 방영으로 중계방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 3-14]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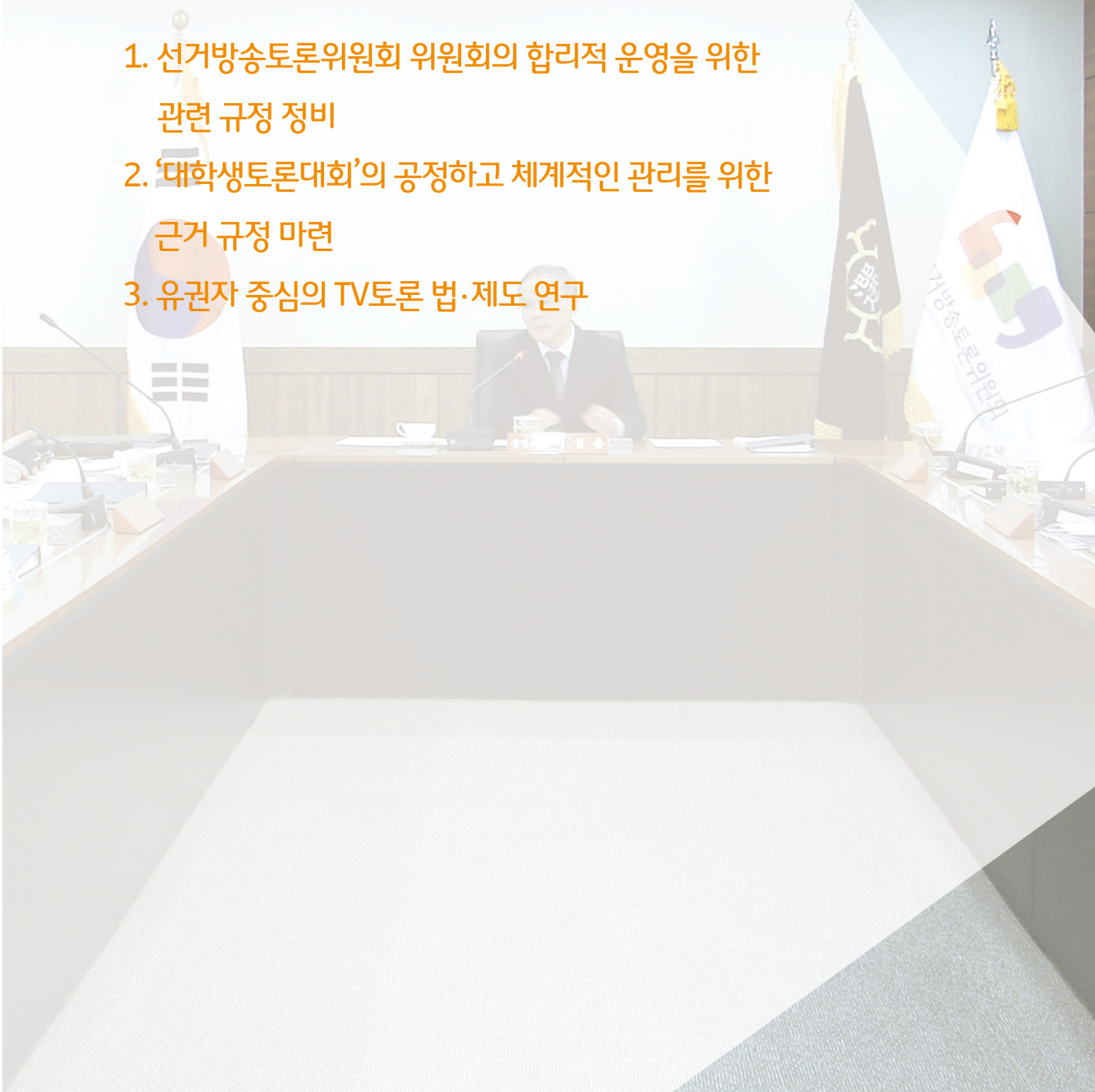
구분	토론자	AGB기준		
		KBS1	MBC	계
2차(11. 13. 10:00)	정책위의장 등	2.6	1.1	3.7



## 제 4 장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법규 제·개정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2. '대학생토론대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3. 유권자 중심의 TV토론 법·제도 연구



## 제 4 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법규 제·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 운영의 통일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대학생토론대회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였다.

###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중앙토론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회의 및 회의결과 공개 원칙(규정)에 따른 회의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며, 회의록 공개 기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등 사적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위원회의 기록 및 보존관리를 체계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참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각 규정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의결 하였으며 이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15.11.12. 훈령 제8호로 제정 시행하였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은 2015.11.18. 관보 제 18640호로 고시되었고, 2016.1.1.자로 시행하였다. 그에 따라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운영 절차와 공개 및 방청절차를 숙지하는 한편 필요한 설비 등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각 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표3-1], [표3-2]와 같다.

#### [표 4-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일전 2일까지 위원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 의안 등을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 심사·검토를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의안, 긴급 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 회의록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녹음 또는 속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원본은 영구 보존하되 비공개 결정된 회의록은 회의록 우측상단의 여백에 빨간색으로 '비공개'라고 표시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회의록은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2014년 「정보공개거부처분최소소송」(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2013누50113) 판결 결과를 반영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위원, 결석위원, 배석자 명단, 발언내용에 관한 해당 발언자의 직책 및 이름, 발언내용 중에 기재된 위원 기타 특정 개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공개 하도록 하며, 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한 의안의 회의록은 비공개 하도록 함.
- 구·시·군토론위원회에 토론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간사를 지정하되, 간사 중 1인은 간사장으로 지정하도록 함.
- 간사장은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 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하되, 지도담당관(행정사무관)을 두고 있는 구·시·군위원회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론사무의 신중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

### [표 4-2]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개최일시 및 장소, 의안 등을 각급토론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위원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의결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방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개최일정 등을 공개할 때에 함께 알리도록 함.
- 위원회의의 방청을 허가받은 사람은 해당 토론위원회에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각급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교부한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함.
-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흉기·폭발물 등 살상용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등의 방청제한 규정을 마련함.
- 방청이 허가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의 진행 중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의 허가없이 위원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할 수 없도록 하고, 방청인이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여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함.

## 2. '대학생토론대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매년 주최하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을 2015.5.15. 예규 제1호로 제정 발령하였다. 규정의 주요내용은 [표 4-3]과 같다.

[표 4-3] 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주요내용

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신청마감일 현재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정하고, 역대 대회 대상 수상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도 대회에 불참한 자 등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함.</li> <li>•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28개팀으로 제한하고, 참가 신청 철회 및 불참 팀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150개 팀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하되, 접수순위 129순위부터 대기팀으로 처리하고, 그 효력은 대회개시일전 10일까지로 함.</li> <li>•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에 불참하고자 하는 팀은 대회개시일전 14일까지 중앙토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회에 불참하는 경우 차기년도 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함.</li> <li>• 대회는 예선, 본선, 결선으로 나누어 진행하되, 예선은 조별 풀리그방식, 본선은 64개팀 대상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함.</li> <li>• 승리팀 결정은 심사위원별 승패결과에 따라 다승팀으로 하되, 예선대회에 있어서는 각 조 다승순 1, 2위팀이 본선에 진출하되, 승수가 같은 경우 승자승, 득점(각 팀이 얻은 총 점수) 순으로 함.</li> <li>• 참가자가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요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감점은 5점 범위 이내로 함.</li> <li>• 심사는 주장의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심사표에 의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li> <li>• 심사위원은 대학교 교수 및 관련 업무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하는 외부 심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경기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심사장으로 함. 또한, 결선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li> <li>•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경기 방식 및 운용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되, 본인 경기에 한하여 다음 경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함.</li> <li>• 심사위원 또는 운영요원이 참가자 수칙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팀을 실격처리할 수 있도록 함.</li> </ul>

## 3. 유권자 중심의 TV토론 법·제도 연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 TV토론 관련 법·제도개선을 통한 TV토론회의 유용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고, 유권자 중심의 TV토론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사)공공미디어연구소(책임 연구자 김동준 소장, 공동연구자 박상호 팀장)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 연구는 현 선거방송

TV토론회 진행방식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형평성'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성을 기반으로 두면서 역동성, 흥미성, 유용성 등의 요소들이 조화된 진행방식을 개발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선거방송 TV토론 관련 법 ·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창설 11주년을 맞이한 토론전문 국가기관으로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민주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선거방송 TV토론 관련 법 · 제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표 4-4] 선거방송 TV토론 관련 법 · 제도 개선안

##### ○ TV토론의 후보자 참여기준 강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초청 후보자의 범위를 국회 의석수 '20인 이상(교섭단체)', 직선 4대 선거 유효 득표율 '15%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을 획득한 후보로 초청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제시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정당간부 등의 참석 의무화

「정당법」 제39조제1항과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제1항에 정책토론회에 정당간부 등의 참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정당의 대표자 또는 「정당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개정하는 방안 제안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시간대 법정화

「정당법」 제39조제3항과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제2항에 "공영방송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 사이의 시간대가 포함되게 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로의 개선안 제안

##### ○ 민주시민토론회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 · 운영 규정에서 기존의 정책토론회 '주관 · 진행'과 함께 '민주토론회를 육성 · 지원'이라는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

연구수행기관인 (사)공공미디어연구소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형식으로 8. 25. 국회의원회관에 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연구결과는 일부내용이 국회의원대표 입법 발의가 되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접수가 되는 등 효율적인 선거방송 TV토론과 민주시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에 참고 · 활용되고 있다.



제5장

# 세계 각국의 토론전문기관과의 교류 협력 강화

1.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지원
2. 미국 대통령토론위원회(CPD)와의 교류협력 추진





## 제5장 세계 각국의 토론전문기관과의 교류 협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지원 및 미국 대통령 토론위원회(CPD)와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 각국의 토론전문기관과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1.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지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토론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 기반 마련하고 국제토론대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A-WEB<sup>1)</sup> 등의 활동상황을 함께 홍보하여 세계 대학생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는 한편 선거제도 등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토론을 통해 외국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대전 소재)이 주관하여 2015. 7. 15.(수) ~ 7. 23.(목)까지 9일간 개최되는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이하 '국제대학생토론대회')를 후원하였다. 국제대학생토론대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 대회로



[사진 5-1]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 토론회 대회 개최식 장면



[사진 5-2]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 대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 축사 장면

1)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세계선거기관협의회)



서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와 한국·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10여일간의 일정으로 각국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토론대회로 지난 2011년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대회이다.

**[표 5-1]**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지원 추진경과

일정	추진내용	비고
2015. 3. 13.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의 국내 개최 사실 인지 (제1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운영위원 위촉식)	심사위원장인 조슈아박 솔브릿지 국제대학 교수
2015. 4. 17.	국제대학생토론대회 후원 필요성 검토	
2015. 4. 22.	국제대학생토론대회 후원 협조 요청(우송대학교) 후원 협조 요청(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2015. 5. 12.	후원 계획 수립(상임위원 결재) 및 관련 부서 협조 요청	국제협력과, 홍보과, 미디어과, 교수기획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2015. 7. 16.	국제대학생토론대회 개최식 참석(위원장 축사)	
2015. 7. 22.	국제대학생토론대회 시상식 참석(상임위원) ※ AIDA(Austarl International Debate Association) 집행위원장(Mustafa Mahmoud)과 면담	
2015. 8. 5.	AIDA(Austarl International Debate Association) 집행위원장 감사서한문 접수	
2015. 10. 22.	감사서한문에 대한 답신	상임위원 명의

홍보 지원사항으로는 아시아 지역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장나라의 축하영상 상영과 한복을 입은 장나라의 모습을 인쇄한 합죽선기념품을 제공하면서 합죽선에 대한 영문 소개자료 포함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특히, 선거제도 등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토론을 통해 외국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였으며, 위원회 홍보를 위해 개최식에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장 축사 및 중앙선관위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홍보 브로슈어(토론회, 홍보과, 선거연수원, A-web)영문판을 배부하였다. 또한 NEC-TV와 협력하여 위원회 홍보활동 관련 취재 촬영을 통해 방영 및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표 5-2]**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주요 후원 내용

지원항목	내용	비고
후원기관 명칭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원기관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li> <li>로고 파일 지원</li> </ul>	대회 홈페이지 · 포스터 · 리플렛 등

지원항목	내용	비고
위원장 포상(부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L(English Second Language) 부문 우승(3명) 및 최고연사상(1명)</li> <li>EFL(English Foreign Language) 부문 우승(3명) 및 최고연사상(1명)</li> </ul>	부상: 정조 행차도가 그려진 넥타이 (영문설명서 포함)
대회 진행비 지원	버스(2대) 사용료 상당의 금액 지원	
기념품 제작 지원	가수 장나라 사진 인쇄 부채 500개	

한편, 국제대학생토론대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중동·중국 지역 등 국가의 대학생들이 다소 불참하였으나, 오세아니아-아시아 지역 12개국 50개 대학에서 360여명이 토론자로 참가하고, 100여명의 각국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한 팀당 각 학교를 대표하는 3명이 팀을 이루어 의회식 토론방식으로 8개 라운드의 예선전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진 5-3]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폐회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시상 장면

국제토론대회를 주관한 AIDA(Austarl International Debate Association)의 집행위원장(Mustafa Mahmoud)과의 면담을 통해서 상호 교류협력의 의사를 교환하였고, 대회 후 2015. 8. 5로 대회지원 감사서한을 보내와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 2. 미국 대통령토론위원회(CPD)<sup>2)</sup>와의 교류협력 추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진적인 미국의 선진토론문화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한국적 토론기법 개발에 반영하여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TV토론의 성공적인 개최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 대통령토론위원회(CPD)와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토론위원회(CPD)는 1988년부터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자TV토론을 주최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미국 대통령토론위원회(CPD)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2) Commission on the Presidential Debates

로 2016년 미국 대통령토론회위원회(CPD) 방문 및 미국 대통령선거 참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TV토론회 개최, 2018년 한미 토론주관기관 MOU(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단계별 추진계획은 [표 5-3]과 같다.

**[표 5-3]** 미국 대통령토론회위원회(CPD)와의 교류협력 단계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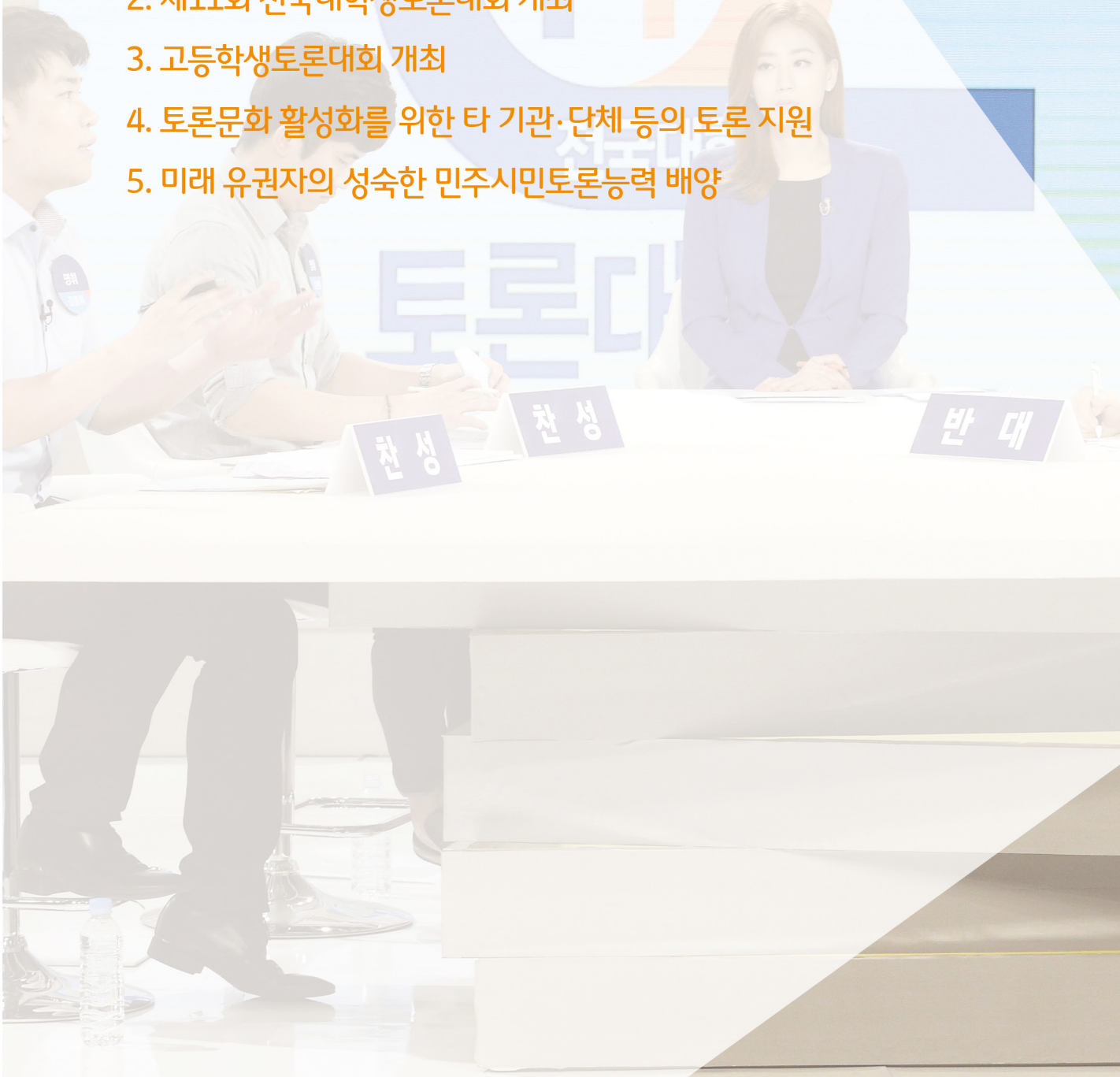
단계구분	시기	내용	비고
준비	'15년~ '16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요예산 확보</li> <li>CPD와의 협력 추진</li> </ul>	
방문·참관	'16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D 방문·참관계획 수립</li> <li>방문·참관 및 결과보고</li> </ul>	
교류협력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년 주요업무시행계획 반영</li> <li>CPD방문단 제19대 대선 후보자TV토론회 참관 지원</li> </ul>	
교류협력 확장	'18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D와 업무협약(MOU) 체결</li> <li>각국 토론기관과 교류협력 확대</li> <li>세계토론기관 협의체 구성 주도</li> </ul>	



## 제 6 장

#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

1.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
2.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3.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4.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타 기관·단체 등의 토론 지원
5. 미래 유권자의 성숙한 민주시민토론능력 배양





## 제 6 장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치권·학계·시민단체 대표 등 유권자 간 소통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과 민주시민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미래유권자의 민주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고등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산학생토론축제와 토론대회, 전국대학생인구토론대회, 광복 70년 기념 전국학생탐구토론대회를 지원하였다.

### 1.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5. 5. 8.(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유권자 대토론회(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를 개최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오미영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국회의원,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 관훈클럽 김의겸 감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성옥 회장,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이희숙 부회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허익범 위원,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자 김경애 대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정치참여와 사회통합: 토론과 선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원대학교 홍성구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이 토론주제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참여한 유권자들의 질문에 발제자·토론자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토론은 발제문을 중심으로 TV토론회의 시청률 높은 방송시간대 편성 등을 통한 국민의 접근성 확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화합, 정치불신과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주제들이 제기되었으며,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토론의 중요성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진 6-1]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 개최 장면



향후 토론회에서 토론된 내용은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제도개선 등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2회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가 정기적인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토론문화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토론의 순기능을 적극 홍보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토론 관련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 2.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확립과 민주시민 토론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 2015. 8. 12.(수)와 13.(목) 양일간에 걸쳐 청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1) 대회 주관 및 후원

이번 대회는 대회 준비 및 진행에 효율성을 위해 개최 장소인 청주대학교와 MOU(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예년 수준의 12개의 후원기관이 참여하는 등 위원회 위상에 걸맞은 대회로 진행하였다.

특히, 선거연수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BS·MBC 등 공영방송사, CJB청주방송 등 지역방송의 지속적인 후원에 이어 새로이 KTV, 한국기록원 후원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생수 1,000병 지원 등 다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한편, 대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2회(논제 선정, 대회진행 등), 대회 당일 2회(대회 진행, 스피커상 선정 등) 등 총 4회의 회의를 통해 철저한 대회 준비 및 진행 과정의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사진 6-2]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를 위한 청주대학교와의 MOU 체결



[사진 6-3]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위원회의 개최 장면

## 2) 개최일자 및 장소

이번 대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대회 취지에 걸맞게 장소를 청주대학교(대학원·보건의료대학)로 정하고, 여름방학기간 초인 7. 2.(목) ~ 7. 3.(금)(1박2일) 개최하여 잔여방학기간을 체계있게 활용하도록 고려하였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인 연기 분위기에 맞추어 8. 12.(수) ~ 8. 13.(목) 같은 장소에서 예선·본선(4강 결정)을 연기·개최하였으며, 결선은 방송제작을 위해 8. 22.(토)에 JTBC 방송사에서 개최·녹화하였다.

특히, 장소로 선정된 청주대학교(총장 황신모)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강당 및 강의실 등 시설·장비·행정인력·서플라이 운영의 무상 지원은 물론 기숙사·식당을 모든 참가자와 심사위원 등의 숙식시설로 활용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대회 진행에 있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다만, 청주대학교의 학내 분규 등 내부 사정으로 대회 준비 초기에 협조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토론대회운영위원회를 청주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대회 전일 대회참가자 등의 숙소인 기숙사에 대한 최종 시설점검시 방향 중인 관계로 숙소 관리상태가 다소 불량한 일부 호실이 발견되었고, 학교기숙사 특성상 숙박에 필요한 준비물이 일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양호한 호실로 변경하고, 휴지·생수·옷걸이 등을 구입·비치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였다.

## 3) 토론논제

토론논제는 선거·정치 등 분야에서 일반인·대학생 등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186명으로부터 283건에 대하여 토론위원회 사무국에서 토론 논제의 적합성, 찬·반 논리의 균형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부서 및 대회 운영위원회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예선과 본선을 구분한 논제 2개를 선정하였다.

[표 6-1]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구분	토론 논제
예선	선거권 연령, 만18세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본선·결선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사진 6-4]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포스터

토론논제는 선거·정치 등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선정하는 바, 전문적인 법규 지식과 찬성과 반대의 균형성이나 시의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사소한 논쟁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견에 따라 최초로 외부 토론논제 검증단(역대 토론대회 수상자 등 4명)을 구성하였다. 검증단의 토론논제별 모든 경기의 찬성·반대 승리팀 분석 결과 예선(선거권 연령 확대)·본선 논제(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모두 찬성팀의 승리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토론논제의 찬·반 균형성은 대등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 4) 대회관리웹페이지 운영

기존 참가신청접수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대진표 작성 및 결과 발표 등의 시간·공간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참가신청 자동확인(이메일/문자 자동 통보) 등 참가신청방법의 개선을 통해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고, 대진표 자동 작성 및 결과발표 등 대회진행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론대회관리시스템(웹페이지)을 구성·운영하였다.

토론대회 관리시스템 개발에 있어 개발업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보고회의를 통해 개발·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항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도 및 구·시·군토론회위 간사를 통해 시험 운영하는 등 자동접수에 따른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한 결과 별다른 이상없이 접수를 마쳤다.

특히, 대진표 작성 및 대회장별 심사결과 입력에 있어 수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회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심사위원의 판단 오류를 발견하는 성과를 내는 등 별다른 사고없이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다른 토론대회 등에 토론대회관리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매뉴얼을 보완한 후 중앙토론회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안내하고 토론대회 주관 기관·단체 등에 공문으로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참가자 접수

전년도 토론개요서의 형식적인 심사 지양과 참가신청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토론개요서 제출절차를 없애고 당일 불참팀 등을 고려하여 대회관리시스템(웹페이지)을 통해 6. 1.(월) ~ 6. 5.(금)까지 5일간 선착순 150개팀으로 한정하여 접수하였다.

접수결과, 전국 53개 대학 150개팀(대학 연합팀 25개, 대기팀 22개 포함)이 참가신청하여 전년대비 10개 대학 12개팀이 증가하였고,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학생(전년대비 9명 증가)과 충청·경상권 소재 대학생(전년대비 각 10명 증가)들의 참여도가 두드러졌으나 전라권 소재 대학생(8명 감소)들의 참여는 감소하였다.

대학별로는 전년 대회에 참가신청하지 않았던 건양대·경민대·경인교대·광주과기원·덕성여

대·부산대·울산과기대·인하대·중앙대·충북대 등 21개 대학교가 참가신청하는 등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이번 토론대회가 광범위하게 홍보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 증가 등으로 인한 대회 연기로 참가신청이 완료된 150개 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던 연기된 일정에 대기팀을 제외한 128개 팀에 대하여 참가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결과 22개 팀이 불참신청하고, 불참신청기간에 17개 팀이 불참신청함에 따라 예선에 참가할 총 111개 팀을 확정하였다.

**[표 6-2]**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참가자 접수 현황 (53개 대학 150개팀 300명) ( )은 전년대비 증감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민대	경북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4(-)	6(▲4)	1(▽5)	2(▲2)	8(-)	4(▽4)	2(▲2)	1(▽5)	2(▲2)	11(▲1)	26(▽4)
광주과기원	국민대	극동대	단국대	대구과학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아대	동주대
2(▲2)	10(▲2)	2(-)	8(▲8)	1(▲1)	2(▲2)	1(▲1)	10(▲6)	2(▲2)	1(▲1)	1(▲1)
명지대	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성균관대	수원대
8(▽1)	10(▲1)	4(▲4)	10(▲6)	13(▽15)	3(▲1)	1(▲1)	9(▲1)	1(▲1)	28(▲17)	1(▲1)
숙명여대	순천향대	송실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과기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전북대
5(▲1)	5(▲4)	1(▽1)	13(▲1)	1(▲1)	6(▲6)	1(▲1)	1(▽3)	7(▽2)	2(▲2)	2(▽3)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외대	한동대	한양대	홍익대		
5(▲5)	10(▲6)	10(▽2)	4(▲4)	1(▲1)	4(▲3)	10(▲4)	16(▽6)	1(▽7)		

## 6) 토론 진행방식 및 규칙

이번 대회도 제4회 대회부터 활용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중앙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역대 대회 (준)결승전 영상 등을 게시하여 참가자들이 참고하도록 하였는 바,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된 문제나 이의제기 사례는 없었다.

**[표 6-3]**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진행방식 및 규칙

방식	진행시간			
	예선	64강~8강	준결승	결승
① 찬성팀 기조연설	1분	1분	1분	1분30초
② 반대팀 기조연설	1분	1분	1분	1분30초
③ 자유토론(팀당)	6분	8분	8분	12분
④ 반대팀 맺음말	1분	1분	1분	1분30초



방식	진행시간			
	예선	64강~8강	준결승	결승
⑤ 찬성팀 맺음말	1분	1분	1분	1분30초
합계	16분	20분	20분	30분
토론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토론시의 1회 발언시간은 팀당 2분을 넘지 못함.</li> <li>전체 토론시간은 팀원끼리 균등하게 배분</li> <li>토론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사용하되, 토론 중에 제시·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출처나 근거 등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함.</li> <li>시간, 방식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점 요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는 팀당 A4용지 규격 범위 내 10매(찬성·반대 자료 포함) 이하 소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당 A4용지 크기 20매(찬성·반대 각 10매) 이내 소지 가능</li> <li>경기당 팀별로 1개의 판넬 사용 허용(방송사 제작)</li> </ul>		

특히, 결승전의 경우 충분한 주장과 정리의 시간을 주고 보다 짜임새 있는 경기로 진행하기 위해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각각 1분30초, 자유토론 시간도 12분으로 늘려 진행하였고, 경기별 찬성·반대팀 결정은 개별 대회장에서 팀별로 희망하는 찬·반을 서면제출로 결정하였으며 경합 시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였다. 예선부터 4강 결정까지는 팀당 A4용지 규격 범위 내 10장(찬성·반대 자료 포함) 이내만 소지 가능하였으나, (준)결승전에는 소지 자료 20매, 경기당 팀별로 1개의 판넬 사용을 추가 허용함으로써 방송 제작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사진 6-5]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경기 모습

## 7) 심사

심사위원은 16개 대회장별로 교수심사위원 1명, 선관위 4~5급 및 6급 각 1명씩 총 3명으로 심사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교수심사위원 18명은 학회의 협조로, 위원회 직원 38명은 내부 공모를 통해 위촉하였다.

심사위원에게는 사전에 교육자료를 송부하고 숙지토록 한 후 대회 당일 교육을 통해 심사위원별 임무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회장별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위원회 직원 9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토론전문가(심사위원) 교육과정을 통해 심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 8) 대회 진행 및 운영

심사위원·참가자·운영요원 교육자료를 각각 작성하고 대회전에 미리 교육자료등을 이메일로 안내하는 등 대회 준비 및 참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가자에게 수시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회 참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대회 운영본부를 독립공간으로 두어 문서 보안을 강화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프린터·복사기 등을 임차·설비하여 대회장별 심사표·심사집계표 처리 등 대회 운영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였다.



[사진 6-6]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대진표

청주대학교 대학생 32명을 운영요원으로 두어 타이머프로그램운영과 진행보조로 배치하고 타이머프로그램 운영실습 등 교육을 실시하여 일정별 임무를 명확히 알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였으며, 제1·2대회장을 신문·방송 취재용 및 참관용 대회장으로 꾸며 언론사 등의 취재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참관인석을 마련하여 내·외빈과 일반 참관자들의 참관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모든 참가자·심사위원 등에게 청주대학교 기숙사 숙박과 식사를 지원하고, 기숙사와 대회장 간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 제공을 통해 많은 참가자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인해 청원보건소와 협의하여 인력 지원(2명), 구급차 배치 및 손 소독제 등을 구비하였으며, 청원경찰서와 공조하여 대학교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별다른 사고없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불참팀의 다수 발생으로 부전승 팀이 과다하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있었고, 심사기준의 공정성이나 심사결과 공개 등에 관한 의견도 있었으며, 현행 모든 참가팀을 대상으로 이틀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대회 형식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바, 전국을 4~5개 권역으로 나누어 예선대회를 같은 날 진행한 뒤 본선(결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각 위원회와 지역 언론의 관심 제고를 통해 토론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가자 등록은 팀명의 가나다순으로 총 4개의 등록석(본부요원 4명 배치)를 두고 심사위원 등록은 심사위원실에 등록석을 두어 서명하게 하는 등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며 참가자·심사위원 등록시 대회 및 위원회 홍보 리플렛, 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충청북도 홍보 리플렛 등을 함께 배포함으로써 기관 이미지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다.

예선대회의 조별 편성(32개 조)은 참가자 등록 결과를 바탕으로 대회관리시스템(웹페이지)을 통



해 같은 대학 소속의 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자동으로 편성하고, 본선 64강 경기에는 예선대회 조별 1·2위팀 간 맞대결을 피하도록 대진표를 구성하였다.

사전 불참신청기간을 두었음에도 대회 당일 25개 팀이 불참하여 최종적으로 등록을 마친 86개 팀에 대하여 당일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3개팀으로 편성된 때에는 각 팀간의 풀리그로, 2개팀으로 편성된 때에는 각 팀간 경기(1회)를 진행하여 조별 1·2위를 결정하여 64강을 가린 후 본선대회 토너먼트전을 운영하였다.

한편, 모든 참가 대학생들이 조별 편성현황과 배정된 대회장, 그리고 본선 진출 현황 등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주대학교 청암홀 로비에 대형 대진표(자석 부착형)를 제작·설치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이끌었다.

다만, 이번 대회의 경우처럼 다수의 불참팀이 발생 시 대회관리시스템(웹페이지) 내의 조별 편성에 있어 부전승 팀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9) 개최식 및 시상식

대회 개최식에는 대회참가자, 심사위원, 운영요원, 내·외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황신모 청주대학교 총장의 축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상임위원의 격려사를 통해 대학생토론대회의 발전을 축하하고, 참가자들에게 토론을 통해 미래의 혁신적인 리더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10여년 동안의 토론대회 스틸사진 등을 영상으로 꾸며 방영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사진 6-7]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식 장면



[사진 6-8]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식 국민의례

시상식과 폐회식에는 참가자, 심사위원, 내·외빈, 후원사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스틸사진을 방영하고, 동상 4개 팀·장려상 8개 팀·후원사특별상 7개 팀·스피커상 8명과 4강 진출팀에게는 준결승 진출권(판넬)을 수여하였다.

시상식 후에는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이효성 학회장의 폐회사와 청주대학교 황신모 총장의 대회 공동주관기관으로서의 감사인사말, 기념사진 단체촬영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으며, 끝으로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념품(합죽선)을 배부하였다.



[사진 6-9]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폐회식 및 시상식 장면



[사진 6-10]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기념사진 촬영

[표 6-4]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구분	훈격	팀수	팀명	대학명	성명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1	와일드카드	서울대	유용재	
				연세대	안정훈	
금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상	1	명휘	서울대	손현명	김동휘
은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상	2	그림메이트	서강대	김기완	이하나
			공감	연세대	정은비	노도일
동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상	4	냉정과열정사이	성균관대	이하규	한현철
			세살차이	부경대	김동현	박예진
			애서니엄	인천대	장지구	현남규
			진지	명지대	김진오	강한석

구분	훈격	팀수	팀명	대학명	성명	
장려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상	8	나도토론	서울여대	이나경	김도희
			천낭빛	경기대	강성준	박은혜
			제페토	국민대	고배현	전상훈
			마파람	한양대	손솔빈	정상운
			입장정리	명지대	김민혜	이인범
			다비춰	중앙대	곽유정	장소현
			스물	국민대	이자환	정윤범
			진솔	성균관대	권진원	김솔
후원사 특별상	청주대학교 총장상	1	처음처럼	가톨릭대	김아로	손영우
	선거연수원장상	1	공명	고려대	최민식	정태석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1	담력	건국대	김덕호	
				경희대	장혜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상	2	ACE	경희대	한상유	
				경인교대	황윤지	
	한국리서치 사장상	1	돈키호테	한국외대	김형준	박서영
CJB청주방송 사장상	1	성남젊음	동국대	강예훈	김정혁	
스피커상	한국정치 커뮤니케이션학회장상	8명	맘스아침	한동대	신영희	
			이웃집토론	경기대	김형주	
			담력	경희대	장혜린	
			지하철학자들	고려대	유진석	
			돈키호테	한동대	이주영	
			미네르바의 부엉이	연세대	오창동	
			고스트	성균관대	김은혜	
			헤르메스	연세대	조정환	

## 10) TV방송

토론대회 (준)결승전은 TV방송 프로그램으로 기획·제작하여 JTBC방송사에서 개최·녹화한 후 방송(8. 30. 08:30~09:30, JTBC 채널)하여 대학생토론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방송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방송사 관계자(PD, 작가)와 수시로 협의하고, 대회 운영위원

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저명한 인사를 심사위원(새누리당 정미경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국회의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이효성 학회장, JTBC 임종주 정치부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성룡 상임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는 등 품격있는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준)결승전에는 진출팀의 친구·지인 등이 참관·응원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참가 대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결승 직후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승 직후에는 모든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하게 하여 흥미성과 유성 등 방송 콘셉트에 맞게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사진 6-11]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준결승전



[사진 6-12]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승전

녹화 종료 후 진행된 시상식에는 주요 내빈, 참가자, 심사위원, 참관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상임위원이 대상 1개 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정희 위원장이 금상 1개 팀·은상 2개 팀에게 각각 시상하고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특히, 방송 이후에는 국회방송(NATV)을 통해 재방송을 실시(9. 12. 07:00~07:50)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를 통해 인터넷방송(9월 편성)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영상을 게시하는 등 대회 참가자들에게 각종 자료 제공을 강화하였다.

다만, 준결승전과 결승전 토론논제가 같아 참가 팀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나 논거 등이 동일하다 보니 토론 과정이 지루했다는 평이 있었으므로, 준결승전과 결승전 토론논제는 서로 다른 논제로 진행하여 보다 흥미롭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장에서 논제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사진 6-13]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준결승전 시상식 장면



## 11) 기타

대회 진행 상황을 영상(24분 정도)으로 제작하고 대회 진행 전반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대회 기록 관리는 물론 중앙토론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 참가자 등에게 알리는 등 대외 홍보 효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한국기록원과의 협조를 통해 “최단기간 최다토론회”에 관한 국내 기록을 인증 받았다.

대회 종료 후에는 토론대회의 후방효과를 위해 후원기관의 대표자와 심사위원 및 대회에 협조해 준 관계자들에게 위원장 명의의 감사 서한문과 대회 참가자, 심사위원에게 감사 인사문을 문자로 발송하고, 각 대학교에 수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품격있는 전국대학생토론회로서 홍보 효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일부 참가자는 인스타그램(joon\_chic, funder2022)을 통해 토론대회 사진을 공유하고, 일부 심사위원은 본인의 블로그 “철없는 남자의 사는 이야기”(싸월드)를 통해 참가에 대한 소회를 게시하였으며, 중앙선관위 공식 블로그인 정당당당스토리(선거명예기자 문규리, 유주신)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회 홍보와 토론위원회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효과를 보았다.

토론대회 참가자 만족도 조사는 총 97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매우만족 6명, 만족 36, 보통 28명, 불만족 22명, 매우불만족 5명으로 응답, 성과지표가 54.1점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22.3점(‘14년 76.4 점)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회 연기로 인한 참가자 개인적 일정 조정의 어려움 그에 따른 참가자들의 준비상 애로와 대회당일 불참자들의 다수 발생으로 빚어진 대회 초반 진행상의 매끄럽지 못한 점, 개최장소인 대학교 숙박시설 등이 다소 불편함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고등학생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고등학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토론대회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토론대회의 개최와 올바른 토론문화 확산을 도모 하고자 ‘2015 고등학생토론회’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였다.

고등학생토론회는 2011년 이래 5년째(대구·인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올해에는 호남지역(광주-특화사업)에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고등학생토론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6-5] 2015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현황

구분	일자·장소	대회방식	토론논제
대구	2015. 7. 25.(토), 경북대학교	토너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li> <li>• 직업의 제1 선택 기준은 돈이다.</li> </ul>
		스피치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li> </ul>
인천	2015. 8. 12.(수), 인천대학교 ※ 예선 : 5.30.(토)	토너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li> <li>•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li> <li>• 대북전단살포, 통일을 위해 적절할가?</li> <li>•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li> </ul>
광주	2015. 9. 22.(화) ※ 예·본선 : 9. 19.(토)	조별 리그/ 토너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도 교육감선거에 참여하여야 한다.</li> <li>•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li> </ul>

한편, 중앙토론위원회에서는 특별상·공로상을 계속 시상·지원하여 토론대회의 연속성을 꾀하였으며, 각 위원회에 방송제작과 대회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등 대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처음으로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하는 광주광역시위원회에 운영 노하우 제공과 유무선 질의·응답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

다만, 참가 학생들의 토론논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난이도 문제, 개최시기의 고정화 필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별도의 후원기관 유치 등이 개선사항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1) 제5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대회

올해로 제5회 대회를 맞이한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대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개최된 대회에 따라 대회 개최 전부터 토론대회와 관련한 문의를 하는 등 해마다 각 고등학교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 교육청과 대구은행, 경북대학교, 대구사립중고등학교연합회, 언론사 등의 후원으로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토론대회라는 대회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이전 대회와 달리 토론개요를 제출 받아 이를 심사하여 토론준비가 덜된 팀을 사전에 걸러냄으로써 대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학교별 예선전을 통한 선발 팀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폭을 넓힘으로써 많은 학교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 수 있었다.

아울러 조별예선전 후 16강에 진출하지 못한 팀에게도 그동안 준비한 논제에 대한 의견개진의 기



[사진 6-14] 제5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대회 기념 촬영



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스피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회 종료시까지 모든 참가팀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에 따른 시비를 방지하고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대구토론교사지원단)과 내부 직원의 비율을 적정히 유지하였으며, 결승전 심사위원은 지역내 토론 전문가 및 기자 등 외부인사로 선정하여 더더욱 심사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표 6-6]** 제5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구분		소속	팀명	수상자		비고
토론 부문	대상	영남고	가온누리	정 현	최재관	대구 광역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상
	금상	운암고	이육사	양지훈	임진석	
	은상	대구여고	동행	이가영	이주은	
		상원고	샤베트	최지영	장지하	
	동상	대구외고	양신박	박시현	신금재	
		혜화여고	DAOH	김단유	김경진	
		포산고	치킨먹조	오지현	이수현	
	장려상	덕원고	완솔	이세영	김가언	
		시지고	와신상담	조영주	김수진	
		함지고	함아고라	한승민	임윤주	
		송현여고	나성	조성해	김나연	
		경상고	다다익선	박석현	안명호	
		경화여고	경국지색	김영서	안수희	
		강북고	화양연화	이동원	김상민	
		경일여고	흥야	곽연수	박희정	
	매너상	경화여고	경국지색	김영서	안수희	
덕원고		완솔	이세영	김가언		
스피치 부문	최우수상	정화여고	언금술사	양하연	박수진	대구 광역시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 위원장상
	우수상	성산고	라운	김혜인	김숙영	
	장려상	대구여상	관포지교	김은해	장임영	
		서부고	우공이산	곽소연	위미정	
		경덕여고	백두산	김나연	하경주	
구암고	누가바	권가연	김누리			

## 2) 제5회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인천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대회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 대회개최 등에 있어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54개팀 96명의 고등학생의 참여하에 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지난해 7월에 개최된 제4회 대회의 경우 기말고사와 방학으로 인해 참여 학생들의 토론준비가 부족하고, 참가자 및 서포터즈 신청이 저조하여 대회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문제점 반영하여 제5회 대회에서는 예선대회와 본선대회를 학기와 방학 기간으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대회에서 사용할 토론논제는 선정위원회 선정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조별 토론논제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여 논제선정단계에서의 공정성시비 문제를 사전에 불식시켰다.

특히, 이번 대회는 OBS경인방송이 TV토론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을 기획·추진하여 민주시민교육과 토론교육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이후에도 방송프로그램 CD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토론 교육자료로 제공하였을 뿐만아니라, 토론대회 참여·방청후기 및 방송(OBS) 시청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토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토론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목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확대하였다.

대회가 5회째를 맞이하면서 참가학교는 교내 토론대회를 거쳐 토론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참여시키고 있고, 참가학생은 철저한 토론준비를 함으로써 대회 인지도와 품격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진 6-15] 제5회 인천 고등학생 토론대회 예선 장면



[사진 6-16] 제5회 인천 고등학생 토론대회 본선대회 장면

다만, 토론주제가 고등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주제였다는 평가가 있으나, 토론주제가 어려운 만큼 더 많은 토론준비로 참가학생들의 토론능력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높은 수준의 토론대회가 되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 대회가 이번 대회를 통해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토론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올바른 토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토론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사진 6-17] 제5회 인천 고등학생 토론대회 수상자 기념 촬영

[표 6-7] 제5회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구분	소속	팀명	수상자
대상	대인고	네가터스	김유진, 김현민
금상	인천국제고	베리타스	김상준, 배희진
은상	미추홀외고	My Mate	윤호정, 함다인
동상	세일고	세바토	심현우, 안태민
장려상	송덕여고	아고라	김한샘, 최은비
	옥련여고	志何	김하연, 한지원
	제일고	자드락에서핀꽃	오민석, 이찬영
	삼산고	별빛이내린다	김민경, 김의주
스피치상	대인고	네가터스	김현민
매너상	대인고	네가터스	김유진
	인천국제고	베리타스	배희진
지도교사상	대인고	네가터스	김관성
	인천국제고	베리타스	임정환

### 3) 제1회 광주광역시(빛고을) 고등학생토론대회

제1회 빛고을 고등학생 토론대회는 전라권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단일 지역토론 대회로 『청춘, 나눔 그리고 공감』이라는 부제와 같이 서로간의 의견 대립이 아닌 청춘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에서부터 대회개최까지 빈틈없는 대회 준비로 올바른 토론문화 확산 및 지역 인재육성 대표브랜드로 발돋움하였다.

개최일정 선정은 교육청·의회 담당부서와 학사·의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대회 일정 결정 예·본선 개최일(9. 19.)은 접수마감일(8. 30.)후 참가학생들이 논제에 대한 자료수집, 시간관리, 자체 대항전 등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 결선 개최일(9. 22.)은 주관방송사(kbc광주방송)의 촬영일정 등을 고려하려 결정 하되 결선진출학교의 학교장, 응원단 등의 참석이 정규수업에 차질이 없는 오후4시 이후로 결정하여 방송녹화에 원활히 진행되었다.

특히,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회는 지역방송 3사 및 케이블방송사까지 프로그램 제작가능여부를 타진하여 최종 결정된 KBC광주방송과 협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에서부터 최적의 방송일자(추석연휴특집)까지 단일 TV프로그램으로 기획 제작·방영하였고, 토론대회 본방송 이후 재방송뿐만 아니라 KBC광주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6-18] 제1회 빛고을 고등학생 토론평대회 예선대회 장면



[사진 6-19] 제1회 빛고을 고등학생 토론평대회 본선대회 방송장면

개최장소는 개·폐회장 및 대회장으로 시설 등이 적합한지 여부, 교통 및 접근 용이성, 개최장소와 토론대회의 상징성 부합여부, 개최기관의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주광역시의회로 결정하였다.

참가자 접수는 접수기간이 방학기간과 중복됨에 따라 접수기간 초반 접수가 저조하였으나, 지속적인 방문안내로 접수 마감기간에 임박하여 예상보다 많은 참가팀이 접수함 시위원회와 구위원회 합동으로 3차례의 지속적인 방문홍보로 학교장 및 교감 선생님의 토론대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심사위원 구성은 예선 3인심사제, 본선 5인심사제로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결선은 kbc 광주방송과 연계하여 학계 등 전문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참여시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회개최일전 15일까지 심사위원 교육자료를 작성·배부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심사위원(위원회 직원)은 별도의 집합교육을 통하여 대회진행, 심사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여 공정한 대회 진행의 결정적 역할을 함 결선은 학계, 토론전문교사가 포함된 전문심사위원(70%)과

일반인과 학생들로 구성된 청중평가단(30%)을 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새로운 포맷을 제시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MBC 「나는 가수다」의 청중평가단 운영 제도를 착안하여 도입 전문심사위원과 함께 일반인의 심사참여 기회확대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 방송프로그램 제작시 짜임새 있는 구성과 방송의 흥미를 가미 하는 역할 기대 방송관계자의 청중평가단 심사제도라는 새로운 포맷 구성에 대하여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좋은 호응을 보였으며, 방송에도 청중평가단(온라인투표시스템)제도가 대대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학교관계자 및 참여학생들은 방송에서만 접한 청중평가단 제도를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참신하다는 평가였으며, 결승에 진출한 학생들의 토론을 직접 현장에서 참관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토론논제는 당초 언론계, 학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토론논제 공모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참가자 접수안내(포스터-논제포함) 시기와 방학기간이 중복되어 직원 및 토론 전문교사의 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논제선정은 토론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차례 논제선정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2개의 논제를 중앙토론회와 협의 결정하였다.

**[표 6-8]** 제1회 광주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시상내역

구분	소속	팀명등	수상자
대상	성덕고	SDF	김현영, 김예지
금상	상무고	사고몽치	강소영, 조해인
은상	송원여고	언금술사	김정은, 하나은
동상	석산고	위버맨쉬	송종웅, 문정주
장려상	살레시오고	나쁘지않아	신승진, 최성준
	문성고	캐처	최정배, 최석호
	광주인성고	금당산	조양인, 이효찬
	송덕고	VAMOS	정형현, 이준영
특별상	대자중학교	교사	임광호
	광주광역시의회	주무관	신동하

## 4.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타 기관·단체 등의 토론 지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오산시와의 토론문화 육성을 위한 MOU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유권



자인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토론문화의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계기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지도 상승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5년 제1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2015 오산학생토론축제와 2015 오산학생토론대회를 각각 후원하였다.



[사진 6-20] 제1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고등부 결승 장면



[사진 6-21] 제1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 수상자 기념 촬영

제1회 오산시 전국학생토론대회는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토론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오산시가 다년간의 자체 토론대회 개최 경험을 토대로 2015. 8. 14.(금) ~ 8. 15.(토)까지 양일간 한신대학교(경기도 오산 소재)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144개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회이다. 이에 중앙토론위원회는 오산시와의 업무협약 결과의 지속적인 민주시민토론문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토론위원회의 활동상황을 홍보하고 미래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토론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학생토론대회를 지원하였다. 특히, 중앙토론위원회가 토론대회의 대표적인 후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위원회 브로슈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예 홍보대사인 가수 겸 탤런트 장나라의 사진을 활용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기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전국의 5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360여명이 토론자로 참가하고 100여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한 팀당 각 학교를 대표하는 3명이 팀을 이루어 오산시 자체 디베이트방식으로 4개 라운드의 예선전을 거쳐 최종 우승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오산시가 전국적인 토론대회를 개최하기로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무관 1명을 대회 추진단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지원 요청함에 따라 대회 전반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수시로 제공하였으며, 토론문화사업 지원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토론대회 후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방향을 설정하였다.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사항 및 홍보 배너를 게시하는 등 대회 홍보활동에 힘썼으며, 대회 심사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7명을 추천하는 등 토론전문가 인력을 지원하였다. 대회 개최식에는 위원장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고, 시상식에는 상임위원이 참석하여 초·중등부 최우수상 및 초·중·고등



부 우수교사상을 시상하여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오산학생토론축제는 2015. 10. 24.(토) 오산중·고등학교에서 오산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행사로써, 오산시, 오산중학교, 오산토론연구회, 오산초·중등토론연구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토론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토론체험과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수상자의 토론멘토링도 함께 실시하였다.



[사진 6-22] 2015년 오산학생토론축제 장소



[사진 6-23] 2015년 오산학생토론축제 토론체험 실습 장면

토론체험 부스는 오산시 관내 중학교에서 총 100여명의 고등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속에 성황리에 운영되었으며, 참여 중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사고 폐지'에 관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선정하여 대학생 토론멘토의 주관 아래 토론준비 방법과 자유토론 방식을 체험하게 하였다. 특히, 토론체험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참관한 학생들에게는 토론대회용 심사표를 배부하여 토론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을 평가하게 하는 등 교육적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리플렛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리플렛을 함께 배부하고 토론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기념품(필기도구)을 배부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2015 오산학생토론대회는 2015. 11. 28.(토) 오산중학교에서 오산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이 참여한 대회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원장상(초·중·고 대상별 우수상, 우수연사상)을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민주시민토론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토론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한 2015 제3회 전국대학생인구토론대회와 교육부에서 주최한 광복 70년 기념 전국학생탐구토론대회를 지원하였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한 제3회 전국대학생인구토론대회 및 광복 70년 기념 전국학생탐구토론

대회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토론시간 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 당해 토론대회가 체계적인 토론시간 관리하에 진행될 수 있었다.

## 5. 미래 유권자의 성숙한 민주시민토론능력 배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5 겨울방학을 이용한 미래유권자 대상 민주시민토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선거와 토론체험 등을 통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며,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중학생(예비 중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2016. 1. 14.(목) ~ 1. 15.(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2015년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개 및 제11회 대학생토론대회 영상 상영, 제11회 대학생토론대회 수상자의 토론 멘토링 및 토론체험, 선거홍보관 선거체험,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5. 4. 1.(목)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기회를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토론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토론능력 배양에 기여하고자 ‘미래 리더를 위한 스피치와 토론’ 체험교육을 최초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교육현장에서의 토론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자치회(초·중·고등학생) 임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매뉴얼은 학생자치회임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토론회의 절차 안내, 후보자 토론회 진행방식 및 시나리오 예시 등 학교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토론방식을 수록하였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원고 작성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여 3개월간 운영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 교육부서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12월 중 교내선거를 실시하는 일부 학교에서 직접 활용 등의 감수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원고가 확정되었다. 매뉴얼은 누구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17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토론위원회에 안내하여 활용하도록 홍보하였다.

## 제 7 장 부록

1. 2015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표
2. 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 법규
4. 역대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5.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6. 역대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공직선거 정책토론

## 제7장 부록

### 1. 2015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표

2015. 1.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김영철 부임
2015. 2. 3.	제1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5. 2. 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김진수(KBS 추천) · 박상기(시민단체 추천) 위원 위촉
2015. 2. 24.	2014 연례보고서 발간
2015. 2. 26.	제2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5. 3. 11.	제3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5. 3. 18.	제4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5. 3. 23.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MBC)
2015. 5. 8.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 개최(한국프레스 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2015. 5. 18.	제5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5. 5. 20.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정(중앙토론회예규 제 2015-1호)
2015. 7. 15.~23.	제40회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대학생토론대회 후원(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원)
2015. 7. 25.	제5회 대구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경북대학교)
2015. 8. 12.	제5회 인천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인천대학교)
2015. 8. 12.~13.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예산 · 본선, 청주대학교)
2015. 8. 14.~15.	제1회 오산시 학생 토론회 후원(한신대학교)
2015. 8. 22.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준결승 · 결승, JTBC)
2015. 9. 16.	제6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5. 9. 16.~18.	광복70주년기념 전국학생탐구토론대회 지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5. 9. 22.	제1회 광주광역시 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광주광역시의회)
2015. 10. 5.	오세아니아-아시아 국제토론행업의회(AIDA)와의 교류협력 추진계획 수립
2015. 10. 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TV토론회 대비 시 · 도토론회 사무국장 회의(선거연수원)
2015. 10. 12.	제7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5. 10. 24.	2015년 오산 학생토론축제 후원(오산고등학교)
2015. 10. 29.	2015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015. 11. 2.	제8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5. 11. 9.	제9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5. 11.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8호) 발령
2015. 11. 13.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KBS)
2015. 11. 1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손교명(새누리당 추천) 위원 위촉
2015. 11. 18.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고시(중앙토론회고시 제2015-1호)
2015. 11. 28.	2015년 오산학생토론회대회 후원(오산중학교)
2015. 12. 8.	제10차 위원회의 개최(위원회의실)
2015. 12. 1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훈령(제9호) 발령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준칙 시달
2015. 12. 2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방송토론 사건·사고 사례 예시집 작성
2015. 12. 29.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개정

## 2. 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시 : 2015. 3. 23.(월) 10:00~12:00 (120분) • 장소 : MBC A스튜디오

항목	내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고	
1	메인 타이틀	20초	-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10:00:00	MC/ S/T	성경섭 (MBC 국장)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대주제 : 우리경제, 나아갈 길은?] - 진행방식 소개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30분	1분	10:01:00		A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 의장)
4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	<b>[주제1: 증세논란과 복지, 해법은?]</b> • MC 공통질문(30초) • 조승수 → 홍종학 → 김세연 답변 (각 1분 정도) • MC 논점 제시 등 코멘트 • ○○○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각 토론자 7분 정도)	27분 (24분30초)	10:02:00	MC/ S/T	B 새정치 민주연합 홍종학 (정책위 수석부의장)
5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I	<b>[주제2 : 공무원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b> • MC 공통질문(30초) • 홍종학 → 김세연 → 조승수 답변 (각 1분 정도) • MC 논점 제시 등 코멘트 • ○○○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각 토론자 5분 정도)	21분 (18분30초)	10:29:00	수화 MIX	C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 부의장)



항목	내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고
6	청중과의 소통의 시간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청중 2명 정도 발언 • 토론자 답변 (각 2분 정도)	10분 (8분)	10:50:00		
7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II [주제3 : 부동산 정책, 방향은?] • MC 공통질문(30초) • 김세연 → 조승수 → 홍중학 답변 (각 1분 정도) • 사회자 논점 제시 등 코멘트 • ○○○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각 토론자 5분 정도)	21분 (18분30초)	11:00:00		A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 의장)
8	공통질문 후 자유토론 IV [주제4 : 청년실업 ·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MC 공통질문(30초) • 조승수 → 홍중학 → 김세연 답변 (각 1분 정도) • MC 논점 제시 등 코멘트 • ○○○ 토론자부터 발언 → (자유토론, 각 토론자 5분 정도)	21분 (18분30초)	11:21:00	MC/ S/T 수화 MIX	B 새정치 민주연합 홍중학 (정책위 수석부의장)
9	청중과의 소통의 시간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청중 2명 정도 발언 • 토론자 답변 (토론자당 각 2분 정도)	10분 (8분)	11:42:00		C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 부의장)
10	맺음말 ☞ MC Bridge • 홍중학 → 김세연 → 조승수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4분 (3분)	11:52:00		
11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6:0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위원 등 소개 (자막)
12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00	VCR	

##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토론진행표

• 일시 : 2015. 11. 13.(금) 10:00~12:00 (120분) • 장소 : KBS TS-1 스튜디오

항목	내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시간)	영상	비고	
1	타이틀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MC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1분	10:01:00	MC/ S/T	김진석 (KBS 기자)
3	주제·진행 방식 설명	- 주제 소개 [ 국정현안을 듣는다 ] - 진행방식 소개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1인 총 발언시간 31분	1분	10:02:00		A 추미애 새정치민주 연합 최고위원  B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C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4	사회자 공동질문 후 자유토론 I	<b>[주제1: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b>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추미애 / 이인제 / 정진후 답변 후 토론자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13분 정도	45분 (39분30초)	10:47:00		
5	사회자 공동질문 후 자유토론 II	<b>[주제2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은?]</b>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이인제 / 정진후 / 추미애 답변 후 토론자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9분 정도	32분 (27분30초)	11:19:00	MC/ S/T  수화 MIX	
6	사회자 공동질문 후 자유토론 III	<b>[주제3 : 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b>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정진후 / 추미애 / 이인제 답변 후 토론자 자유토론 ☞ MC 진행방식(토론 규칙) 설명 : 토론자당 약 9분 정도	32분 (27분30초)	11:51:00		
7	맺음말	☞ 사회자 Bridge • 추미애 / 이인제 / 정진후 맺음말(각 1분)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맺음말 시간 조정 가능	4분 (3분)	11:55:00		
8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30초	11:56:30	S/T F.S	위원 등 소개 (자막)
9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6:40	VCR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2016. 1. 15. 제13755호]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5.8.1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

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1.25>
-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 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05.8.4〉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8.4, 2008.2.29〉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05.8.4〉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

다.〈개정 2005.8.4, 2008.2.29〉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⑤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0.1.25〉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 <개정 2015.12.24.>**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7.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 법 제261조제5항· 법 제82조의2제4항	400	가. 매회마다 : 400
----------------------------------	------------------------------	-----	---------------

## 정당법

[일부개정 2016. 1. 15. 법률 제13757호]

- 제39조(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6.1.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제3조(협조요구)**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12.23.>

② 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1.25.>

**제5조(직무)**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 · 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 ② 시 · 도토론위원회는 시 · 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의 대담 · 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 · 시 · 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 · 감독한다. <개정 2005.8.4.>
  - ③ 구 · 시 · 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의 대담 ·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 · 시 · 군의장선거에 있어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8.4.>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 · 시 · 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의 대담 ·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 ·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 · 시 · 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 · 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 · 시 · 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 · 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 ·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 · 시 · 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8.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1.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 · 공영방송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학계 · 법조계 · 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상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상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05.8.4.]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상임위원)**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회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회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4., 2010.1.25.>

② 각급토론회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회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회위원회 및 구·시·군토론회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2.16., 2008.3.24.>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각급토론회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회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각급토론회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회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회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회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제14조(위원회의)** ① 각급토론회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

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5.>
-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5., 2013.11.25., 2014.5.27.>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 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②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25.>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 ① 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1.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1.25.>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 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⑥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25., 2016.1.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비초청대상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10.1.25.>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③ 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개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5.>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0.1.25.>

####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들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들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들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8.4.>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211호, 2004. 3. 12.>**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토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토론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호, 2005. 8.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73호, 2007. 2. 16.>**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296호, 2008.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 2008.12.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방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 **부칙 <제321호, 2010.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59호, 201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92호, 2013.11.25.>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0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제411호, 2014.5.2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 **부칙 <제415호, 2014.7.29.>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 2016.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정 2013. 11. 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인문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토론자의 토론회를 포함한다. 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계자와 토론회와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후보자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참석할 토론자 수가 달라져 진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 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를 지정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7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3. 토론회와 관련된 음향 및 영상에 필요한 주요장비 및 시설

② 토론회장의 구조는 어느 쪽에서 토론자를 카메라로 비추어도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양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후보자가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제9조(토론자의 지참물 등)**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4 용지 규격 이내 20장 이하의 낱장자료 외에는 서류, 노트북,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소지한 채 참여할 수 없다.

② 토론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기조연설과 맺음말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제12조(재방송)**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토론회의 재방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2.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전원이 재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공표에 관한 특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11.1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훈령 제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 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소집)**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위원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 의안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소집 및 의안 등의 통지는 서면(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조(의안)** ① 의안은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의결사항

규칙 제5조에 따른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와 정책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초청후보자 선정, 사회자 선정, 주제 및 질문사항 선정, 토론진행방식 결정, 그 밖에 해당 토론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

2. 보고사항

가. 법령 및 각종 사무편람·지침 등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토론위원회 사무국(간사장을 포함한다)에 보고를 요청한 사항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다. 토론위원회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 등 위원들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② 의안은「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안대장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안처리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안을 상정(上程)한다. 다만, 위원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안처리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때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 의안처리결과 공포 또는 정회(停會), 산회(散會), 휴회(休會), 폐회(閉會)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때마다 의사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 또는 검토를 위해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면의결)**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위원회의에 상정(上程)할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일상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의안으로써 심사·검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의결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 의결록에 의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각급토론위원회의의 사무국장·간사장 및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결석위원, 배석자
3. 상정(上程) 의안
4. 의안별 공개·비공개 결정사항
5.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6. 개회·폐회시간, 산회(散會)·정회(停會)·휴회(休會)·개의(開議)시간 등

③ 회의록의 간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녹음 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발언내용의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음 또는 속기할 수 있다.

② 녹음 또는 속기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수정(修正)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토론위원회의 동의(同議)를 받아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보존 등)** ① 회의록은 각급토론위원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된 의안이 있는 경우 그 회의록 우측 상단의 여백에 별지 서식에 따라 빨간색으로 **비공개** 라고 표시한다.

③ 회의록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 및 보존·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라 해당 회의록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위원, 결석위원, 배석자 명단, 발언내용에 관한 해당 발언자의 직책 및 이름, 발언내용 중에 기재된 위원 기타 특정 개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③ 위원회의에서 비공개 결정된 의안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간사를 지정하되, 간사 중 1인은 간사장으로 지정한다.

② 간사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한다. 다만,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시·군토론위원회의 간사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에 상정(上程)할 의안의 정리·배부, 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의 운영과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하며 간사장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정 2015.11.1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5-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 15조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 등 공개)**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위원회의 일시, 장소, 의안(이하 “일정등”이라 한다)을 각급토론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4.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각급토론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의안의 전부 또는 각 의안별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제3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방청)** ① 위원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의 방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일정등을 공개할 때에 방청의 허가 여부를 함께 알려야 한다.
- ④ 방청인은 방청이 허가된 의안에 대해서만 방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에서 의안의 심사·의결이 종료되면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의 방청을 허가받은 사람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고, 개회(開會) 전까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 ⑥ 각급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신분증명서를 보관한 후 방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⑦ 방청인이 위원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

**제5조(방청석 설비)** 각급토론위원회는 방청인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석을 마련하되, 위원회의장과 방청석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방청의 제한)** ① 위원장은 무기·흉기·폭발물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장과 방청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방청인은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제7조(녹음 등 허가)** ① 방청인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위원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청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위원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위원회의를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하기 위하여 녹음기, 캠코더, 카메라, 방송장비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어깨띠, 윗옷(上衣), 표찰(標札), 손팻말(手旗), 그 밖의 소품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퇴장명령)**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방청이 허가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방청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운영규정

[제정 2015. 6. 1. 중앙토론위예규 제2015-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전국 대학생토론대회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토론을 진흥하고 대학생의 올바른 토론관 정립과 주권의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시민토론문화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회는 「전국대학생토론대회」라 칭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 중앙토론위원회는 매년 전국대학생토론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주최하고, 학회 및 대학교 등과 공동주관할 수 있다.

**제4조(개최시기 등)** 개최시기·장소, 기간 및 일정 등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조직)** 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토론위원회에 대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겸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1. 내부

가.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팀장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장

2. 외부

가. 학회 임원

나. 대학교 대외협력 부서장

- 다. 그 밖의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자
- ④ 임기는 매년 대회 결선일 후 30일까지로 한다.
  -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 보조 및 기관 간의 업무 협의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중앙토론위원회와 학회 및 대학교 등 공동주관하는 기관·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1명을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 ⑥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간사를 수석간사로 한다.

**제6조(직무)** ①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토론논제와 경기방식 및 규칙에 관한 사항
  - 3. 심사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회와 관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대회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제7조(운영)** ①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대회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대회 업무 관련 주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대회 심사위원장(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학회 및 대학교 등 소속 직원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수당의 지급)**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외부 위원(제7조제4항의 대회 심사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자문위원에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분장)** 운영위원회 내에 대회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중앙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대회 관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참가자격 및 신청

**제11조(자격 등)** ① 본 대회는 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상으로 한다.

1.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국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재외국민과 그 자녀에 한하며, 휴학생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역대 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
2.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3.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도 대회에 불참한 사람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람

**제12조(참가신청과 접수)** ① 본 대회의 참가신청은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등록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되, 참가신청서와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신청은 접수순위에 따라 128개 팀까지로 한다.

③ 참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접수순위는 등록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제13조에 따라 신청 철회 및 불참 팀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150개 팀에 이를 때까지 접수하되, 접수순위 129순위부터는 대기팀으로 처리한다. 다만, 대기팀의 효력은 대회개시일전 10일까지로 한다.

⑥ 팀은 2명으로 구성하며, 동일 학교 학생 또는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할 수 있다.

⑦ 팀원 교체는 부득이한 경우, 참가신청 등록완료 후 1회에 한하여 대회개시일전 14일까지 등록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제13조(신청 보완 및 불참)** ① 참가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참가신청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직접 보완할 수 있으며, 중앙토론위원회가 흠결을 발견된 때에는 언제든지 이



를 참가신청자에게 보완 또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 참가자격 및 제12조에 따른 증명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중앙토론위원회가 이를 보완 또는 확인을 요구함에도 참가신청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에 불참하고자 하는 팀은 대회개시일전 14일까지 불참사실을 중앙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대회에 불참(대회개시일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차기년도 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

## 제4장 대회 논제

**제14조(논제 공모)**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논제를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② 논제는 정치, 선거와 관련된 사항 및 대학생들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내용 등으로 한다.

**제15조(검증단)**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과 역대 대회 수상자 중에서 약간 명의 검증단을 둘 수 있다.

② 검증단은 논제의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균형성과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검증의견을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검증단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외부 검증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논제 선정등)** ① 논제는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예선과 본선에 대한 논제를 각각 선정할 수 있으며, 결선의 경우에는 예선과 본선 논제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논제는 대회개시일전 2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장 대회 방식

**제17조(조별 편성)** ① 예선대회의 조 편성은 4개 팀 1개 조로 한다. 다만, 불참하는 팀이 있는 경우 3개 팀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조 편성은 무작위로 정하되, 동일 대학교 소속의 팀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경기방식, 규칙 등의 결정)** ① 본 대회 of 경기방식과 규칙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대회는 예선과 본선 및 결선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2팀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논제에 대하여 한 팀은 찬성 의견, 다른 팀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③ 예선은 조별로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하며, 본선은 64개팀을 대상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9조(예선 및 본선)** ① 경기진행방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1회의 총 경기시간은 15분내지 20분 이내로 한다.

1. 찬성팀 기초연설(1분)
2. 반대팀 기초연설(1분)
3. 찬성팀과 반대팀 간 자유토론(예선은 각6분, 본선은 각8분)
4. 반대팀 맺음말(1분)
5. 찬성팀 맺음말(1분)

② 제1항의 진행방식별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별 결과에서 승수가 많은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한다.

④ 예선대회에 있어서는 각 조의 다승순 1, 2위팀이 본선에 진출하되, 승수가 같은 경우 승자승, 득점(각 팀이 얻은 총 점수) 순으로 한다.

**제20조(결선)** ① 결선은 4강에 진출한 4개 팀을 대상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1회의 총 경기시간, 경기 진행방식과 진행방식별 시간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이 경우 결선 참가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경기규칙)** ① 찬성팀과 반대팀의 결정은 각 경기에 앞서 팀별로 찬성과 반대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결정하고 경합시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② 참가자가 소지할 수 있는 자료는 찬성과 반대 자료를 포함하여 팀당 A4용지 규격 범위 내에서 10장 이하로 하며, 어떠한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결선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자유토론의 경우 반대팀부터 발언하며, 팀당 1회 발언시간은 2분을 넘지 못한다.

④ 전체 토론시간은 각 팀의 팀원마다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⑤ 참가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토론 중에 제시·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출처나 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참가자는 경기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팀원이 아닌 사람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사소통 하는 행위
2. 무례한 동작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
3. 심사위원에게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⑦ 참가자가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점 범위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제22조(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 ①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은 자유토론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손을 드는 등 발언자를 향하여 적절한 동작을 취한다.
  2. “질문있습니다” 등의 말로 주의를 끈다.
- ② 제1항의 제기를 받은 발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답해야 한다.
1. 답변을 거부하는 분명한 몸짓이나 손짓을 한다.
  2. 거부 의사를 구두로 밝힌다.
  3. “잠시 기다립시오” 등과 같은 말로 잠시 보류한 후 수용한다.

③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답변을 거부당한 후에는 다시 질문할 수 없다.
2. 상대방이 답변을 시작하고 있을 때에는 질문할 수 없다.
- ④ 상대방의 발언 중 질문 시간은 질문한 팀의 발언시간에서 차감한다.
- ⑤ 제1항의 제기를 받은 발언자는 질문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발언 중 최소 2회의 질문 제기를 수용할 수 있다.

**제23조(발언시간관리시스템)** ① 참가자의 발언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대회장에 발언시간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발언시간관리시스템은 노트북과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며, 모니터에는 팀별 총 발언시간과 잔여시간이 표시된다.

③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발언시간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각 경기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장 대회의 심사

**제24조(심사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주장의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
  2. 내용 구성력, 창의력과 순발력, 이해력과 대응력 및 일관성
  3. 전달력
  4. 토론태도와 협동성
  5. 제21조(경기규칙)제7항에 따른 감점기준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심사표]에 의하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은 대학교 교수 및 관련 업무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하는 외부 심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내부 심사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본 대회와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회는 경기당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장은 외부 심사위원 중 1명으로 한다.
- ③ 결선은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심사위원장(학회장 등),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과 국회의원, 변호사 기타 토론 전문가 중에서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공동주관하는 학회의 장이 된다.
- ④ 심사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에서 준비한 심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심사위원은 대회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⑥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심사위원장, 심사장)**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대회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심사위원 자격 판단
  2.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들의 토론 심사 능력 평가
  3. 대회 시작 전 심사위원 교육
  4. 기타 대회의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
- ② 결선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경기진행 및 결과 기록 관리 등
  2. 각 경기별 무승부가 발생한 경우 승패의 결정
  3. 경기 진행 중에 제기된 이의 처리

4. 제30조(참가자 수칙)제1항의 위반사항 적발 시 처리

**제27조(심사원칙)** ① 심사위원은 [별표]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객관성 및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개인적 신념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 ② 모든 심사위원은 종교, 성별, 인종, 국적, 성적 선호도, 나이, 사회적 지위, 어투, 모든 장애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금지된다.
- ③ 심사결과는 비공개하며, 다음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심사결과 등 기타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 ④ 결선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참가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1. 발언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성원, 야유를 하는 경우
  3. 팀원끼리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경우
  4. 발언 중인 참가자와 대화하는 경우
  5. 인신공격 발언을 하는 경우
  6. 다른 심사위원의 주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해당 경기 전까지의 누적 심사 점수나 승리 전적은 해당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심사위원에게 심사 결과나 토론평가를 요청할 수 없다.
- ⑥ 팀원 중 한 명이 특정 경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제28조(심사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경기 방식 및 운용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되, 본인 경기에 한하여 다음 경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해당 경기의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을 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대한 이의 제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처리하며, 이를 접수한 대회 운영본부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참가자는 본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중앙토론위원회는 홈페이지 또는 대회 안내 등을 통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 제7장 대회 진행

**제29조(대회운영본부)** ① 운영위원회는 대회 중에 대회운영본부를 둔다.

② 대회운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선, 본선, 결선 대회의 대진표 결정
2. 경기장별 심사위원 배정
3. 심사결과의 정리
4. 각종 이의제기의 처리

③ 대회운영본부는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론대회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참가자 수칙)** ① 모든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회와 관련된 모든 문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금지된 참고자료를 토론장에 몰래 반입하는 행위
3. 토론 경기 진행 중 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② 심사위원 또는 운영요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에게 알려야 하며,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팀을 실격처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대회운영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격패로 처리하는 경우의 점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패배한 팀은 각 구성원이 최하점을 받는다.
2. 승리한 팀은 대회의 모든 토론에서 얻은 점수의 평균점을 받는다.
3. 점수는 대회가 모두 끝난 후 합산된다.

**제31조(참관자 수칙)** ① 오디오 녹음과 비디오 녹화 장치는 대회운영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다.

② 모든 참관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람하고자 하는 경기 시작 10분전까지 대회운영본부에 도착하여 관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람 승인을 받은 참관자는 대회장에 정숙하게 입장하고 질서있게 착석한다.
3. 참가자를 소개할 때와 각 경기가 종료했을 때만 박수를 친다.

③ 모든 참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회장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대회장에 늦게 입장하거나 일찍 퇴장하는 행위
3. 토론이 진행중일때 대회장에서 진행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4.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질문하는 행위
- ④ 결선 심사위원장 및 심사장은 제3항에 해당하여 대회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참가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이 사실을 대회운영본부에 알려야 한다.

**제32조(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다른 참가자가 참가 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제기는 반드시 결선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장을 통해 대회운영본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1. 모든 형태의 폭력 또는 위협
2. 성희롱
3. 스토킹 또는 신체적 희롱
4.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불법 약물의 공급이나 소비
5.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대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참가자
6. 토론 참가자와 기타 대회 참가자 사이의 모든 부적절한 관계
7. 대회장소 내 사유재산이나 공공 시설물의 의도적인 훼손

② 대회운영본부는 제1항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의제기 대상자의 자격 박탈이나 정지 결정
2.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등 관계 당국에 통지

## 제8장 시상

**제33조(시상)** ① 본 대회의 시상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상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2. 개인상 : 스피커상
3. 특별상

② 단체상 및 개인상, 특별상의 표창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4조(훈격)** ① 본 대회의 시상훈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대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
  3. 스피커상 : 주관학회의 장
  4. 특별상 : 후원기관·단체의 장
- ② 시상훈격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상금의 지급)** 제33조의 시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대상은 500만원 이하
2. 금상은 300만원 이하
3. 은상은 200만원 이하
4. 동상은 100만원 이하
5. 장려상은 50만원 이하
6. 특별상은 50만원 미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그 상을 지급하는 기관이 정한다.

#### 부칙

(시행일과 적용)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심 사 표

예선	제( )조, 제( )심사반	본선	64강, 32강, 16강, 8강		
찬 성 팀		반 대 팀			
팀 명					팀 명
성 명					성 명
평가 영역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 영역 (배점)	
/10	기조 연설	○주장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이고 타당한가?		기조 연설	/10
/40	자유 토론	○논점을 잘 정리해서 질문하는가?(내용 구성력)		자유 토론	/40
		○상대논리의 약점/모순점을 찾아낸 질문인가?(창의력, 순발력)			
		○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는가?(이해력, 대응력)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가?(일관성)			
/10	맺음말	○주장을 설득력 있게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였는가?		맺음말	/10
/20	전달력	○ 다양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하였는가? (메타포 등 사용 여부, 어휘, 문장구사력)		전달력	/20
		○ 음성 전달은 적절하였는가?(빠르기, 크기, 고저, 강조, 어조)			
/20	토론 태도 팀워크	○ 자세와 태도는 적절하며 토론 예절을 잘 지켰는가? (말꼬리 잡기 여부, 토론 자세 등)		토론 태도 팀워크	/20
		○ 협력과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졌는가?			
	감점	규정 제21조제2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5점범위이내)			감점
총 점	찬성팀 심사의견		반대팀 심사의견		총 점
	○			○	
	○			○	
심사위원 성명 :			서명 :		

※ 감점 시 심사의견란에 감점사유를 반드시 기재

일반전형

제 · 보결선거  
후보자·V토론회 관리

정당정책토론회 관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 법규 제 · 개정

세계 각국의 토론전문  
기과의 교류 협력

민주시민토론회의 육성

부록

[별지 1]

## 제0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 신청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0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다음과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접수번호	20 -	참가신청서				
팀 명	[6자 이내(7자 이상은 약칭)로 기재하되, 지역명·대학명칭은 사용 불가]					
사 진 1 (이미지 파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E-mail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학교      학과      학년 소재지(시·군·구까지만 기재):				
사 진 2 (이미지 파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E-mail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학교      학과      학년 소재지(시·군·구까지만 기재):				

숙박여부	2인 숙박	1인만 숙박(이름 기재)	2인 비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p>○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회 운영 관련 통지 등 연락</p> <p>○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소속대학 등</p> <p>○ 보유 및 이용기간: 대회 참가 확인 등을 위한 기간(1년)</p> <p>○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p> <p>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참가자1 서명: _____</p> <p>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참가자2 서명: _____</p>			



[별지 2]

제 호

# 상 장

○○○<sup>①</sup>

○○○<sup>②</sup>

위 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sup>③</sup>와  
공동주관한 제○<sup>④</sup>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sup>⑤</sup>

○○○<sup>⑥</sup>    ○○○<sup>⑦</sup>

주 ①상장명 ②소속 및 성명 ③공동주관하는 기관명 ④제호 ⑤시상기관명  
⑥시상기관의장의 직위 ⑦시상기관의장 성명

## 4. 역대 정당정책토론회 개최현황

연도	개최일시	토론자	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2005	'05.12.3.(수)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원내수석부 대표 (4개당)	정치 민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소득의 안정화</li> <li>• 고용 불안정과 구조 조정</li> <li>• 공교육 부실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li> <li>• 집값 거품 형성과 분양원가 폭등에 따른 내 집 마련 곤란</li> <li>• 빈부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등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li> <li>• 교육 재정, 교육시장 개방, 3불정책, 교원 평가 등 교육 문제</li> <li>• 대북지원, 북한 인권 문제</li> <li>• 도청내용의 처리와 향후 대책</li> </ul>	염재호(고려대)  ※ 질문자 신 울(명지대) 김민전(경희대)
2006	'06.7.19.(수)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4개당)	경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해복구 대책</li> <li>• 8·31정책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 및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li> <li>• 당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책</li> </ul>	신 울(명지대)
	'06.11.24.(금) 23:40~01:40 (MBC)	당대표 (5개당)	국정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값 안정화 대책</li> <li>• 2007년 정부 예산안 쟁점</li> <li>• 북핵문제 해법</li> </ul>	박선영(가톨릭대)
2007	'07.5.30.(수) 10:00~12:00 (KBS)	원내대표 (6개당)	국정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FTA 체결의 득과 실</li> <li>•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방향</li> </ul>	김민전(경희대)
	'07.8.3.(금) 23:40~01:40 (MBC)	당대표 (5개당)	정치 외교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문제와 대북 정책방향</li> <li>•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운영방안</li> </ul>	신 울(명지대)
2008	'08.6.27(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 장 (7개당)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쇠고기협상 문제</li> <li>• 고유가 등 물가안정 대책</li> </ul>	엄길청(경기대)
	'08.11.28.(금) 10:00~12:00 (KBS)	대표자가 지정 (7개당)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li> <li>• 고용안정과 실업 대책</li> </ul>	엄길청(경기대)
2009	'09.4.15.(수) 10:00~12:00 (MBC)	대표자가 지정 (7개당)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소주제1 : 추가경정예산 편성 - 소주제2 : 미래성장동력</li> </ul>	유정아(방송인)
	'09.11.13.(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7개당)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책과제 - 소주제1 : 세종시 해법 - 소주제2 : 4대강 사업</li> </ul>	유정아(방송인)
2010	'10.7.16.(수)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7개당)	경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감경기, 왜 살아나지 않나?</li> <li>• 성범죄, 어떻게 막을 것인가?</li> </ul>	노동일(경희대)
	'10.11.16.(화) 23:20~01:20 (MBC)	정책위 의장 등 (9개당)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예산안,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 서민경제와 중소기업활성화 -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li> </ul>	정혜정(방송인)

연도	개최일시	토론자	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2011	'11.3.28.(월)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9개당)	국정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생현안, 각 당의 대책은?</li> <li>- 뛰는 물가, 어떻게 잡나?</li> <li>- 치솟는 전·월세, 대책은 없나?</li> </ul>	오미영(경원대)
	'11.11.15.(화) 10:00~12:00 (MBC)	정책위 의장 등 (8개당)	국정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li> <li>- 청년실업 해소 방안은?</li> <li>- 비정규직 대책은?</li> </ul>	엄길청(경기대)
2012	'12.6.26.(화)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4개당)	정치 교육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9대 국회의 핵심 쟁점과 과제</li> <li>- 원 구성, 왜 못하고 있나?</li> <li>- 제19대 국회 : 국민의 신뢰, 어떻게 얻을 것인가?</li> <li>- 민생현안 법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li> </ul>	황상무(KBS)
	'12.7.18.(수) 10:00~12:00 (MBC)	정책위 부의장 등 (4개당)	경제 노동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9대 국회, 각 정당의 경제정책 방향</li> <li>- 대기업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li> <li>- 어려운 경제, 어떻게 살릴까?</li> <li>-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풀까?</li> </ul>	신동호(MBC)
2013	'13.6.18.(화)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4개당)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 현황</li> <li>갑을관계      • 통상임금</li> <li>경제활성화 방안 · 고용 및 근로환경 문제</li> <li>지하경제 양성화</li> </ul>	홍기섭(KBS)  ※국민질문자 (4명)
	'13.11.25.(월) 10:00~12:00 (MBC)	정책위 의장 등 (4개당)	경제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li> <li>- 소주제1 : 복지정책, 방향은?</li> <li>- 소주제2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증세 필요한가?</li> </ul>	김상철(MBC) ※ 패널 김연명(중앙대) 한상완(현대경제연구원)
2014	'14.7.7.(월) 10:00~12:00 (MBC)	원내 대변인 등 (4개당)	국정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li> <li>- 소주제1 :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li> <li>- 소주제2 :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li> </ul>	김상철(MBC)
	'14.11.12.(수) 10:00~12:00 (KBS)	혁신위원장 등 (4개당)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li> <li>- 소주제1 : 국회개혁</li> <li>- 소주제2 : 정당개혁</li> <li>- 소주제3 : 선거개혁</li> </ul>	김진석(KBS)
2015	'15.3.23.(월) 10:00~12:00 (MBC)	정책위의장 등 (3개당)	국정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경제, 나아갈 길은?</li> <li>- 증세논란과 복지, 해법은?</li> <li>- 공무원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하나?</li> <li>- 부동산 정책, 방향은?</li> <li>-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li> </ul>	성경섭(MBC)
	'15.11.13.(금) 10:00~12:00 (KBS)	최고위원 등 (3개당)	국정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현안을 듣는다</li> <li>-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li> <li>-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은?</li> <li>- 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li> </ul>	김진석(KBS)

## 5. 역대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현황

구분	개최일시	토론자	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제4회 지방선거 (’06.5.31.)	1차	’06.3.25.(토) 10:00~12:00 (MBC)	정책위 의 장 (5개당)	경제 노동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기준</li> <li>• 양극화 현상과 원인에 대한 진단</li> <li>• 8.31 후속정책과 부동산 투기 방지 방안</li> <li>•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li> </ul>	홍종학 (경원대)
	2차	’06.4.15.(토) 10:00~12:00 (KBS)	원내대표 (5개당)	정치 행정 외교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정당의 구체적인 매니페스토 실천방안</li> <li>•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행정구역 개편</li> <li>•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li> <li>• 지방분권화와 중앙정부의 역할</li> </ul>	김민전 (경희대)
	3차	’06.5.12.(금) 22:00~24:00 (MBC)	당대표 (5개당)	국정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31지방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li> <li>• 경제현안 인식과 대응방안</li> <li>• 국민 관심사</li> <li>• 지방선거 후보공천제도</li> </ul>	염재호 (고려대)
제17대 대통령선거 (’07.12.19.)	1차	’07.9.21.(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 장 (5개당)	경제 노동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li> <li>• 제17대 대선, 정책선거 실현방안을 듣는다</li> </ul>	신 율 (명지대)
	2차	’07.10.25.(목) 10:00~12:00 (MBC)	원내대표 (5개당)	교육 복지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것인가?</li> <li>• 깨끗한 선거와 정치자금</li> </ul>	엄길청 (경기대)
	3차	’07.11.2.(금) 23:40~25:40 (KBS)	선 대 위원장 (5개당)	정치 외교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직한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li> </ul>	송재룡 (경희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08.4.9.)	1차	’08.1.31.(목) 10:00~12:00 (MBC)	원내대표 (4개당)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기능</li> <li>- 통일·안보 기능</li> <li>- 교육등 기능</li> </ul> </li> </ul>	신 율 (명지대)
	2차	’08.2.29.(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 장 (5개당)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정책</li> <li>- 중소기업 정책</li> </ul> </li> </ul>	엄길청 (경기대)
	3차	’08.3.13.(목) 23:20~01:20 (MBC)	당대표 (5개당)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정책선거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선거의 실현 방안</li> <li>- 깨끗한 선거의 실현 방안</li> </ul> </li> </ul>	박선영 (동국대)
제5회 지방선거 (’10.6.2.)	1차	’10.3.23.(화) 10:00~12:00 (MBC)	원내대표 (6개당)	교육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li> <li>• 지방행정체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li> </ul>	박순애 (서울대)
	2차	’10.4.23.(금)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5개당)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 제대로 되고 있나?</li> <li>• 정부 재정, 문제없나?</li> </ul>	엄길청 (경기대)
	3차	’10.5.6.(목) 23:10~01:00 (MBC)	당대표 (5개당)	정치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li> <li>• 6.2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li> </ul>	유정아 (방송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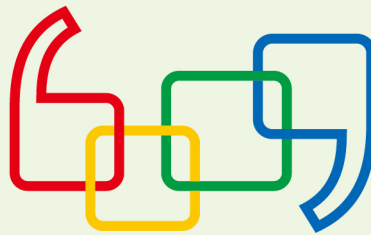
구분	개최일시	토론자	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2.4.11.)	1차	'12.1.30.(월)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7개당)	경제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li> <li>중소기업과 대기업 정책</li> <li>농어민과 소상공인 대책</li> </ul>	유정아 (방송인)
	2차	'12.2.24.(금) 10:00~12:00 (MBC)	원내대표 등 (6개당)	국정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당의 핵심 복지정책과 그 실현방안</li> <li>각 당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li> <li>복지재원 확보 방안</li> </ul>	정혜정 (방송인)
	3차	'12.3.5.(월) 10:00~12:00 (KBS)	당대표 등 (6개당)	정치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9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li> <li>각 당의 총선공약</li> <li>깨끗한 선거 실현 방안</li> </ul>	신 율 (명지대)
제18대 대통령선거 ('12.12.19.)	1차	'12.9.24.(월) 10:00~12:00 (KBS)	정책위 의장 등 (4개당)	민생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민 생활 안정 대책</li> <li>영유아 복지 대책</li> <li>청년 취업 대책</li> <li>노인 복지 대책</li> </ul>	김진수 (KBS)
	2차	'12.10.31.(수) 10:00~12:00 (MBC)	정책위 의장 등 (3개당)	경제 노동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벌개혁 실천방안은?</li> <li>경기침체 해법은?</li> <li>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은?</li> </ul>	신동호 (MBC)
	3차	'12.11.16.(금) 10:00~12:00 (KBS)	선대위 대변인 (4개당)	정치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 쇄신 방안</li> <li>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 실현 방안</li> <li>대북정책 방향</li> </ul>	황상무 (KBS)
제6회 지방선거 ('14.6.4.)	1차	'14.3.27.(목) 10:00~12:00 (KBS)	원내 대변인 등 (4개당)	복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li> <li>교육현장, 이대로 좋은가?</li> </ul>	홍기섭 (KBS)
	2차	'14.5.7.(수) 10:00~12:00 (MBC)	정책위 의장 등 (4개당)	경제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경제 활성화 방안</li> <li>임금체계 개편 문제</li> </ul>	김상철 (MBC)
	3차	'14.5.8.(목) 22:50~24:50 (KBS)	대변인 등 (4개당)	정치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재난관리시스템</li> <li>국정원 개혁</li> <li>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문제점</li> </ul>	홍기섭 (KBS)

## 6. 역대 후보자토론회 개최현황

구분		선거 구수	계	초청 대상		초청요건 미충족 대상		합동		
				대담토론	연설	대담토론	연설	토론	연설	
합계		-	2,021	1,163	21	58	440	147	192	
대통령 선거	제17대	-	4	3	-	1	-	-	-	
	제18대	-	4	3	-	1	-	-	-	
국회 의원 선거	제17대	지역구	243	250	156	-	5	29	-	60
		비례대표	-	3	2	-	1	-	-	-
	제18대	지역구	245	383	142	-	1	140	49	51
		비례대표	-	3	2	-	1	-	-	-
	제19대	지역구	246	358	231	-	5	107	12	3
		비례대표	-	3	2	-	1	-	-	-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제4회	계	262	299	180	18	5	30	36	30
		시·도지사	16	20	18	-	2	-	-	-
		비례대표 시·도의원	16	17	17	-	-	-	-	-
		구·시·군의 장	230	262	145	18	3	30	36	30
	제5회	계	276	361	229	-	21	71	21	19
		시·도지사	16	21	13	-	5	-	3	-
		비례대표 시·도의원	16	29	17	-	12	-	-	-
		구·시·군의 장	228	292	183	-	1	71	18	19
		시·도 교육감	16	19	16	-	3	-	-	-
	제6회	계	277	353	213	3	16	63	29	29
		시·도지사	17	21	16	-	3	-	2	-
		비례대표 시·도의원	17	29	17	-	12	-	-	-
		구·시·군의 장	226	285	163	3	-	63	27	29
		시·도 교육감	17	18	17	-	-1	-	-	-



2015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례보고서



인 쇄 | 2016년 2월

발 행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  
Tel. (02) 3473-9947

디자인 · 인쇄 | 렛츠디자인 (02) 2268-8658